

#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2005. 11.

#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Measures for Readjustment of Legal System of the  
Online public Service on the E-Government and  
Ubiquitos-Government

2005. 11

연구자 : 김 재 광 (부연구위원)

Kim, Jae-Kwang

## 국문 요약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른바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내용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바야흐로 ‘전자정부’를 지나 ‘유비쿼터스정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민원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그간의 전자정부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비쿼터스정부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비한 법제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첫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둘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셋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넷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들 4가지 유형에 관련되는 중요법령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보안문제를 노출시켜 전자정부 전체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연구하였다. 물론 그것이 다른 유형의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소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체계상의 문제 및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전반에 걸쳐 개별법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거나 법령간 및 규정간 충돌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현실의 변화는 그 폭과 형상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례하여 법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의 제시를 통해 그러한 괴리와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키워드 :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자정부, 유비쿼터스정부,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

## Abstract

An Online Public Service(OPS) is one of the primary(or core) content for E-government or U-government. OPS has being considered as a progressive way to change the frame of the administrative organ and a symbol of the renovation for the government. Although E-government and the infrastructure of ubiquitous has been developed rapidly, the recent report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reveals that it is possible that the on-line documents in OPS could be manipulated or a forgery without any difficulty. It brings disgrace upon our government which leads the creation of the U-government.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classified the law related to the public service by a simple typ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ystem of OPS using a different approach. Specifically, for this study, the laws related to OPS are classified into four major types: 1) base-related laws of the OPS; 2) promotion-related laws of the OPS; 3) use-related laws of the OPS; and 4) related laws for reverse function prevention of the OPS. Among these major types, the current study is mainly focused on related laws for reverse function prevention of the OPS and policy implication. Especially, using a in-dept analysis on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P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some of the problems (e.g., conflicted contents on the laws) are suggested in the later part of this study.

Although the laws regarding OPS will be changed,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law will become larger. Based on this fact,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and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out these policy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strangement and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law will be minimized.

※ **Keywords** : online public service, E-government, U-government, Electronic government law,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gital divide

## 목 차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목적 .....	13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6
제 2 장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실태 .....	19
제 1 절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	19
I. 유비쿼터스 정부의 의의 .....	19
1. “전자정부”에서 “유비쿼터스정부”에로 .....	19
2. 유비쿼터스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유형 .....	22
3. 주요 선진국의 유비쿼터스 정부 추진현황 .....	25
II.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구현목표 .....	26
1.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	26
2.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구현목표 .....	27
III.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검토 .....	28
1. 전자신청시스템 .....	28
2. 전자조달시스템 .....	28
3. 문서관리시스템 .....	29
4. 정보공개시스템 .....	29
5.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유통 .....	29
6. 전자서명·전자관인 .....	30

IV. 부처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 .....	31
1.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행자부 G4C시스템) .....	31
2.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 .....	33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35
4.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시스템 .....	36
5. 중앙인사위원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37
6. 국세청 - 홈텍스서비스(HTS) .....	38
7. 보건복지부 - 4대 사회보험의 포털사이트 .....	39
8. 특허청 - 특허넷 .....	40
9. 병무청 - 병무행정정보시스템 .....	41
10. 대법원 - 부동산등기전산화 .....	42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	44
I. 전자자치단체의 특징 .....	44
II.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	44
1. 의 의 .....	44
2. 서비스 내용 .....	44
III. 서울시의 사례 .....	45
1. 인터넷과 민원 .....	45
2.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	46
3.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	47
4. 서울시 강남구 사례 .....	48
제 3 절 외국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사례 .....	50
I. 외국의 전자자치단체의 개관 .....	50
1. 전자자치단체의 정의 .....	50
2. 평가지표와 전자자치단체 .....	51
II. 주요 국가의 전자자치단체 정비사례 .....	52



1. 영 국 .....	52
2. 오스트리아 .....	52
3. 미 국 .....	52
4. 독 일 .....	53

### 제 3 장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제 1 절 서 언 .....	57
-----------------	----

#### 제 2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I.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현황 .....	58
1. 개 설 .....	58
2. 정보화촉진기본법령 .....	60
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 .....	68
4. 전자서명법령 .....	101

####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5

1.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권한의 민원업무 제한문제 ..	105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의 형해화 .....	107
3. 정보제공기관에만 정확성 유지책임 부여문제 .....	108
4. 국가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문제 .....	109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법체계상 지위문제 .....	109
6. 행정정보의 수요조사의 의무화 .....	109

#### 제 3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9

I.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현황 .....	109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	110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	116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	122
4. 인감증명법 .....	126
5. 주민등록법령 .....	126

6.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	133
7. 사무관리규정 .....	134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5
1. 민원사무처리법령 .....	135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	138
3. 정보공개법령 .....	139
4. 주민등록법령 .....	141
제 4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2
I.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현황 .....	14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령 .....	143
2. 행정절차법 .....	146
3. 전기통신기본법 .....	148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149
5. 통신비밀보호법 .....	150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51
1. 정보통신망법 .....	151
2. 행정절차법 .....	157
제 5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8
I.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현황 .....	158
1. 개 설 .....	158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령 .....	160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령 .....	168
4. 형법과 전자민원서비스 .....	180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2
1. 보안관련법제 .....	182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	189
3. 정보격차해소법제 .....	192
 제 4 장 결 론 -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언 .....	 195
 참 고 문 헌 .....	 19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온라인 행정서비스(online administrative services)는 이른바 전자정부(e-Government)의 핵심요소이나,<sup>1)</sup> 더 나아가서는 유비쿼터스정부(Ubiquitous-Government : U-정부)<sup>2)</sup>에서도 핵심내용이다. 여기서 유비쿼터스정부(u-Government)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국민들에게는 행정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민원신청에 소요되는 다소의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보화를 촉진시켜주어 정보사회 내지 유비쿼터스사회에서 정보시민 내지 유비쿼터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지식과 정보활용능력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덧붙이자면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기존의 행정관료제가 안고 있는 한계였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객지향성(customer-oriented)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sup>3)</sup> 고객지향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일반적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전자적

1)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돼 현재의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을 구축하고 31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2004년에 사업비 1조 117억원이 집행됐고, 2009년까지 5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2) 한국전산원, “유비쿼터스사회의 발전추세와 미래전망”, 2005. 8. 4. 참조.

3) 정충식, 『전자정부론』(녹두, 1997), 17면.

4) 문신용,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한국행정연구』 1999년 봄호(제8권 제1호), 116면. 참고로 미국의 전자정부의 개념은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정부의 행정능률을 최고로 하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민원처리, ②비방문민원처리, ③전자적 고지·통지, ④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국민이나 행정기관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려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한 것을 보면 전자정부의 구현이라고 하는 정부의 슬로건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져 桑田碧海하다는 소회를 지울 수 없다.

주요 전자정부 사업으로는 대법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주요 관공서 5대 행정정보(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외에도 전자국회, 전자지방정부 등의 업무혁신과제와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sup>5)</sup>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 인터넷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민원 건수는 총 4,700만 종에 달한다. 또 개인들은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 수입세금 계산서 등 485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sup>6)</sup>

행정자치부는 2002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지난 8월까지 총 570만여건의 민원신청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20여종에 달한다. 민원인들은 이 기간 중 모두 250만건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더라도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비교적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단순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만이 아니라 온라인 행정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sup>7)</sup> 즉, m정부와 t정부 서비스를

---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김재광,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02. 1) 참조.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합한 전자투표는 현행처럼 찬반과 같은 흑백선택 대신 선택의 세분화가 가능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가능케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 흑백선택이 아니라 특정 방안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환산적 투표도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투표방식의 등장이 가능하고, 투표자의 연령과 직업이 분석되어 계층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전자투표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의 책임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문화일보 2005. 9. 28 기사 참조.

7) 유비쿼터스 서비스 유형으로는 모바일 행정업무지원, 모바일민원처리, 24시간 민원

실시 또는 실시예정으로 있다. 즉, 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사용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민원의 처리상태 등을 문자로 휴대폰에 알려주는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강남구청도 올 2월말에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U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전자정부 그리고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sup>8)</sup> 문제가 된 사이트는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인이 키보드에 입력하는 내용을 해커가 그대로 볼 수 있는 등 해킹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에는 대통령 비서실 등 76개 국가기관이 연계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로 해커들이 설치고 개인정보가 줄줄이 샌다면 정부의 신뢰도 훼손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다. 이는 유비쿼터스사회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sup>9)</sup> 더욱이 리처드 헨터 같은 학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인해 ‘비밀이 없는 세계’(World Without Secrets)가 도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안대책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

업무처리, D-TV민원서비스, 고객맞춤형서비스, 텔레마틱스서비스, CCTV 등 주민 안전서비스, RFID활용 실시간모니터링, RFID활용 유통/물류관리, 무인행정처리서비스 등 총 10개 서비스인데 현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8)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장 시연에서 위·변조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데는 5초, 위·변조된 주민등록등본이 프린트되어 나오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인터넷을 통해 21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 사이트가 2003년 구축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이런 영성한 시스템으로 257만 건의 서류가 발급됐다. 갈수록 이용자가 늘어 올해 들어서는 매달 20만 건씩 발급됐다는데, 이렇게 위·변조한 서류를 악용한 사례가 과연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9)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 중앙일보 & Joins.com

없다. 성공적인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사회에 맞는 표준화,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절박한 법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 뒤,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자도 그 동안 전자정부법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이를테면 “한국전산원”)도 전자정부법 일반에 대해, 또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문제,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들 연구들이 특정주제 등에 집중하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법제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전자정부사업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행정서비스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제 전반을 분석하여 그에 내재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적절한 개선 내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해 보았다.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1절에서는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개념정립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유형과 부처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제2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적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의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외국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 브레멘시의 온라인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소개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등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분류한 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담았다. 제2절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법령과 전자정부법령 그리고 전자서명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정부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비가 요청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개별법의 규정을 행정유형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제3절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원사무처리법령, 정보공개법령,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인감증명법령, 주민등록법령, 기록물관리법령, 사무관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행정절차법,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 통신비밀보호법령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5절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격차해소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형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와 관련하여 법제정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몇년 내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 정부가 유념하여야 핵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만,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제라고 할 때, 그 한계를 어떻게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가능한 직접



## 제1장 서론

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비록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분석, 문헌 조사 및 분석, 관련 법제 조사 및 분석, 비교법적 고찰 등을 주로 하였다.

## 제 2 장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실태

### 제 1 절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 I. 유비쿼터스 정부의 의의

##### 1. “전자정부”에서 “유비쿼터스정부”으로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sup>10)</sup> 다시 말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대 국민 서비스와 최적의 기업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최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6월 발간된 UN의 전자정부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이 정한 전자정부 지수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1.62를 크게 상회하는 2.30으로 190개 UN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하였다.

2002년 9월, 미국 브라운 대학이 세계 189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점을 기록하여 세계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제대로 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신뢰성이 있고 편리한 서비스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자정부의 목표가 아니

10) 각국의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Martin Eifert and Jan Ole Puschel, National Electronic Government, Routledge, 2004 참조.

라 전자적인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제 바야흐로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U정부로 발전해 가는 추세에 있다. 유비쿼터스는 정보혁명에 뒤이은 제4의 혁명으로 일컬을 만큼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또 하나의 물결로 지칭되고 있다.

유비쿼터스정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즉, 유비쿼터스정부는 업무수행 방식을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시간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의 'ubique'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다. 유비쿼터스개념은 지난 1988년에 미국 제록스사가 팰로알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최초로 제창하였다. 초기에는 단순히 물리공간에 편재된 컴퓨팅과 네트워킹을 상상했으나, 이후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컴퓨팅 개념이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이미지, 광고 카피 등에서도 유비쿼터스 용어를 새로운 컨셉으로 활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U-사회 구현에 대한 인식도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발전추세가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비쿼터스를 제3공간의 창조로 이해하기도 한다. 유비쿼터스는 물리공간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혁명으로써,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물리적 환경과 사물들 간에도 전자공간과 같이 정보가 흘러 다니며, 마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능화되어 정보를 수·발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유비쿼터스는 기존의 물리공간과 IT기술로 탄생한 가상공간의 충돌과 유기적인 융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제3공간의 개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미래로써,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야 할 국가적 지향점으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다양한 마이크로 칩(소형 컴퓨터)이 사람, 사물, 환경 속에 내재화(embed)되고 이들이 지능화됨과 동

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도와주는 신개념 컴퓨팅 환경이라고 일컬어진다. 즉,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과 연결·융합되어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IT는 기존 정보화가 전자공간에 한정하여 추진된 것에 비해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의 특성을 이식하여 정보화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그동안 단절되어 처리되던 업무, 생활이 연계되어 인간의 생활공간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IT의 특성에 관하여 마크 와이저는 네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니다. 둘째,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의 어디서나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 상황(장소·ID·장치·시간·온도·명암·날씨 등)에 따라 서비스는 변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컴퓨터의 작동방법 및 구조를 몰라도 각종 업무에서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성적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기존의 (협의의) 정보화 사회와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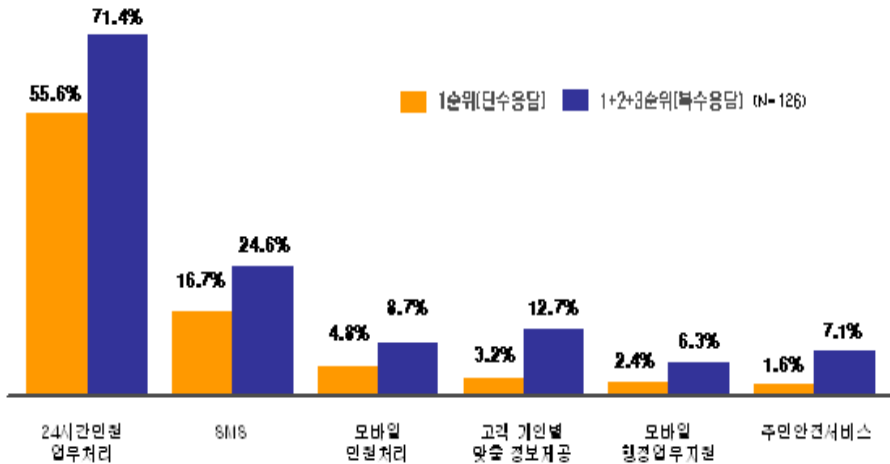
【표 - 1】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 (기존 IT와 U-IT 시대 비교)

구 분	(협의의)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 (지능기반 사회)
핵심기술	인터넷 네트워크	센서, Mobile
산 업	IT 산업 중심	가전, 자동차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
정 부	One-Stop, Seamless 서비스 통합/포털 서비스 백업 시스템에 의한 위험관리	보이지 않는 서비스 실시간 맞춤 서비스 상시 위험 관리
기 업	주로 거래(지불) 정보화	생산, 유통, 재고관리 전분야의 무인화
개 인	표준화된 서비스	지능형 서비스

## 2. 유비쿼터스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유형

유비쿼터스 서비스 유형으로는 모바일 행정업무지원, 모바일민원처리, 24시간 민원업무처리, D-TV민원서비스, 고객맞춤형서비스, 텔레마틱스 서비스, CCTV 등 주민안전서비스, RFID활용 실시간모니터링, RFID 활용 유통/물류관리, 무인행정처리서비스 등 총 10개 서비스인데 현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중에서 주이용서비스는 24시간 민원업무처리 서비스이며 공공부문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주이용 유비쿼터스 서비스 유형



출처 : 한국전산원, 『공공부문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용현황과 과제』, 8면

공공부문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은 2006년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5-'07년 사이에 모바일민원처리, 모바일 행정업무지원, 고객맞춤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확대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DTV, 텔레마틱스, 무인행정서비스 등은 '06년 이후에나 도입이 본격화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는 현재 약 42% 정도의 기관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1% 정도의 기관이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서비스 이용기관	도입계획有 기관*	도입계획無 기관**
정부부처(13)	46.2%	46.2%	7.7%
자자체(114)	81.6%	12.3%	6.1%
공공기관(113)	11.5%	50.4%	38.1%
산하기관(37)	8.1%	29.7%	62.2%
비영리기관(23)	47.8%	26.1%	26.1%
합 계(300개)	42%	31.3%	26.7%

\*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서비스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

\*\*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 도입계획도 없는 기관

출처 : 한국전산원, 『공공부문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용현황과 과제』, 9면

그리고 현재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24시간 민원업무처리 서비스(71.4%)이고, 그 밖에 SMS(Short Message Service, 모바일 민원처리)(24.6%), 고객개인별맞춤서비스(12.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제시된 10가지 서비스 중 이용률이 높은 것은 2~3가지 정도로 이용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및 비용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단말기·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관련기기 비용부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RFID는 유비쿼터스 핵심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기 국방분야에 적용된 RFID가 의료, 유통 등 생활전반에 급속히 응용되어 사물·공간에까지 지능화가 지속되고 있다. RFID는 IC칩이 내장된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원격에서 읽을 수 있는 기술이다.

RFID는 정보의 축적, 사물 및 제품 자동식별, 위치확인 등이 가능하며 기존 바코드 대체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RFID 도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RFID시범사업 등 도입이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유통·물류분야에서부터 항공수하물, 가로수관리, 재고관리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up>11)</sup>

성공적인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사회에 맞는 표준화,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내지 U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이다. 그렇게 본다면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최적의 기업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2)</sup>

---

11) 외국의 유비쿼터스 정책 추진동향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원, 『유비쿼터스사회의 발전 추세와 미래전망』, 2005. 8. 4 리포트 10-11면 참조. 강서구청은 RFID와 GIS를 이용하여 가로수 위치, 수종, 병력 등을 온라인 및 PDA로 모바일 관리가 가능한 첨단 가로수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경상북도청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의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RFID를 이용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주국제공항은 국내선 수하물이 컨베이어벨트에 나올 때마다 승객의 항공기 좌석번호가 자동으로 스크린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12) 전자정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최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6월 발간된 UN의 전자정부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이 정한 전자정부 지수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1.62를 크게 상회하는 2.30으로 190개 UN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하였다. 2002년9월, 미국 브라운 대학이 세계 189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점을 기록하여 세계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제대로 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신뢰성이 있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자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고양시키는 것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 3. 주요 선진국의 유비쿼터스 정부 추진현황

#### (1) 미 국

미국은 지난 91년부터 “네트워크·IT 연구계획(NITRD)”에 의거, 인간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 20억불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 유비쿼터스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리더십 유지·확대를 위해 동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국립과학재단(NSF)는 2010년 이후 100Mbps급 지상·위성 통신망을 통합한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차세대 PC, 텔레마틱스, 홈네트워크와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 핵심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정부·민간간 협력체제 및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sup>13)</sup>

#### (2) 일 본

일본은 유비쿼터스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총무성 산하 ‘u-Japan 정책간담회’에서 ‘u-Japan최종보고서’를 2004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2010년까지 국민의 100%가 초고속망을 이용하도록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의 80%가 직접적 혜택을 입도록 물류·교통 등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고, 셋째가 유비쿼터스사회 역기능 대응을 위해 네트워크 안정성·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13) 외국의 유비쿼터스 정책 추진동향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원, 『유비쿼터스사회의 발전 추세와 미래전망』, 2005. 8. 4 리포트 4-5면 참조.



정보가전(디지털TV·홈네트워크 등),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등 유비쿼터스 관련기술 및 인프라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 주도로 '21세기 로봇챌린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혼다, 소니, 도요타 등 업계에서도 로봇개발을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 (3) E U

EU는 '사라지는 컴퓨팅계획'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유형을 연구하는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새로운 정보사회계획 'i2010'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사라지는 컴퓨팅계획'은 IT를 사물과 환경 속에 통합해 인간생활을 지원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유럽미래기술계획(FET, 02-05년)의 자금지원하에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즉, 16개 프로젝트에는 SmartITS(사물의 지능화), Paper++(종이의 정보저장기능), 2Wear(착용형 컴퓨터 환경), Grocer(유비쿼터스 전자상거래)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Disappearing Computer II (03-06)에서는 자율인식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인 PALCOM(Palpable Computing)프로젝트를 추가 추진중에 있다.

제6차 연구개발계획(FP6)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등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 '유럽 정보사회 2010(i2010)계획을 2005년 6월에 발표하였고, 통신방송융합 등 디지털기술 발전추세 대응과 DMB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2010년까지 GDP대비 R&D 예산비율을 미국(2%), 일본(3%)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I.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구현목표

### 1.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일반적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방법의 하나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종전의 오프라인 행정서비스와 대칭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해진

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점차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상당 부분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 2.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구현목표

### (1) 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 실현

정부의 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국민 지향적 대민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소변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 등 국가 주요 민원정보 DB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기관방문횟수를 최소화하여 행정능률과 국민편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 (2) 정부·기업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

정부의 대기업 서비스 차원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는의 목표는 정부와 기업 간 거래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확산시켜 정부와 기업 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매 결정에서 입찰·대금지불까지 정부조달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시키고, 조달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 (3) 정부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정부내 기관, 정부기관간 그리고 정부와 정부(지방정부)간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인사·재정·교육·행정 등 국가 핵심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완성하고,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으로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4)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유통 인프라 구축

정보의 유통과 관리 인프라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개인의 정보보호, 전자적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전자서명 이용 확산을 통해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내 통합전산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Ⅲ.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검토

#### 1. 전자신청시스템

행정에 대한 주민의 필요는 생활형태의 변화, 시간적 가치의 제고, 고령화의 진행 등의 사회적 변화와 인터넷의 폭발적 보급, 정보이용기술의 진전, 휴대전화 및 모바일 보급 등의 정보기술혁신을 배경으로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과 주민의 접점이 되는 신청절차사무에 있어서는 창구서비스의 향상, 행정서비스의 신속화, 접수시간의 연장, 신청지 제한의 완화 등, 주민주체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기구 및 운영을 한층 효율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자치단체 중에서의 신청제출절차사무의 전자화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2. 전자조달시스템

행정에 있어서 조달업무의 전자화는 종래부터 재무회계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행정내부사무의 전자화가 중심에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이 보급되어 행정기관에서는 조달자인 납입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G2B인프라가 정비되어, 양자간의 조달프로세스를 전자화하게 된 것이다. 자치체에 있어서도 공공공사의 전자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문서관리시스템

국가 및 국민·기업 및 행정내부에 있어서 각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내부사무의 근간이 되는 문서관리사무를 전자화하고, 사무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문서관리시스템은 전자정부·전자자치체 실현의 입구가 되는 시스템으로, 행정내부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작성시부터 폐기시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 4.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이 법률에서는 국민의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및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의 공개범위, 절차, 행정문서의 관리 및 안내서 정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 “정보의 공개”가 진실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즉 행정문서를 공개하기 위한 필요한 문서관리사무 및 그 밖의 사무의 효율화의 추구 및 주민으로부터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용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 5.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 (1) 사업개요

전자문서시스템간 문서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문서의 송수신 배달증명 및 경로추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과 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재가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내용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 (2) 서비스 내용

##### 1) 전자문서시스템간 문서중계 시 송수신 배달 및 경로 추적

행정기관간 송수신한 공문서의 배달증명 및 경로추적이 가능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문서송신자의 본인 확인기능이 가능하다.

2) 결재 후 한번의 클릭으로 다수기관 문서 발송

전자결재가 완료된 문서는 발송기관을 선택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다수 기관에 자동으로 발송된다.

3)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자동 연계

공무원들이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중 결재기능이 필요할 때, 결재내용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하여 전자결재의 중복입력을 방지하여 전자결재를 가능하도록 한다.

6. 전자서명·전자관인

(1) 사업개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정보유통은 상대방 신원확인이 곤란하고, 해킹을 통해 위·변조가 용이하므로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관련문서의 비밀성 등을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기반을 구축하였다.

(2) 서비스 내용

1) 민원인 공인전자서명 발급

민원인에게 공인전자서명을 발급하여 인터넷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보안 전자우편 등을 제공하여 민간부문과 정부간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전자입찰, 전자세금 신고 등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2) 행정전자서명 발급

공무원에게 행정전자서명을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유통, 전자결재 등의 행정업무 처리시, 공무원 신원을 확인하고 공문서 유통의 보안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

#### IV. 부처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

##### 1.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행자부 G4C시스템)

###### (1) 사업개요

과거에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국민은 하나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수기관을 방문하고 동일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함에 따라 민원불편 및 비효율성이 야기되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신속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유한 주민, 부동산, 기업, 세금, 자동차 분야의 주요 정보를 관련 기관간 공동활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처리를 위하여 첨부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전자서식, 전자서명 등 전자민원처리의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민원인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받고, 민원안내를 보는 화면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직접 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 및 인증절차를 거쳐서 정보공동 이용시스템에 이관하고 처리된 민원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결과를 통보 받아 발급된 전자문서를 민원인에게 제공한다.

2003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발급 인터넷 민원은 총 21종으로 다음과 같다. 병적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토지대장 열람·등록 교부, 농지원부등록교부 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선박승무경력 증명, 위험화물적재 선박원부 등·초본 교부 및 열람, 모부자 가정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등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도로점용허가증 등 5종과 식약청의 영업허가증재교부 등 9종도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행자부 G4C시스템)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1) 체계적이며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제공

민원인의 일상생활(Life Cycle), 활동, 민원검색, 민원사례, 자주 묻는 질문에 따라 쉽게 민원사무를 찾아갈 수 있다. 개별 민원사무에서는 해당 민원내용, 처리절차, 관할처리기관, 구비서류, 민원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2)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전자적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 처리 간소화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전자서식시스템, 보안·인증 시스템, 전자수수료지불 시스템 구현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 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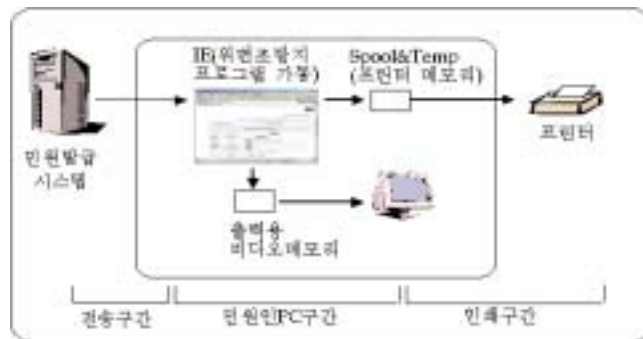
3)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정보 제공 및 민원인의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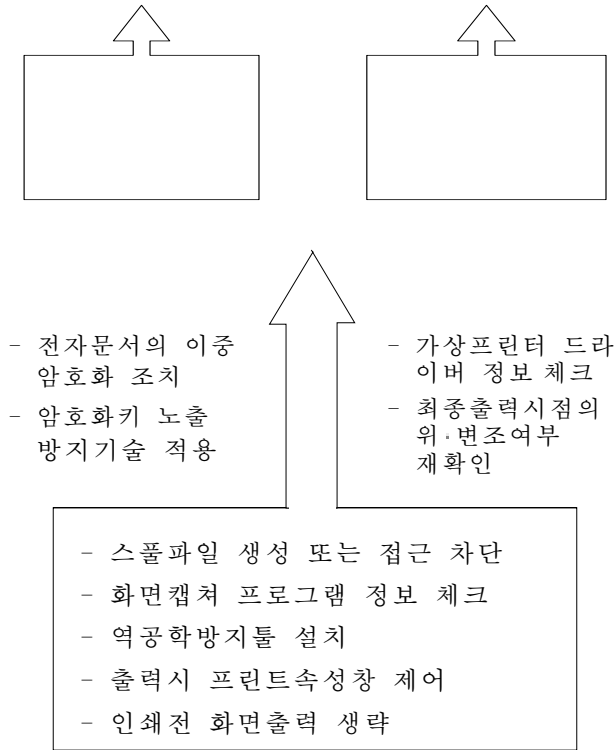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 및 생활편의정보를 안내한다. 정부정책과 새 소식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평가

인터넷 민원서류가 올스톱하던 때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도 중단되었다가 개시되었다.

【그림-1】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 2.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

### (1) 사업개요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조달업무 처리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고, 조달업체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공공조달정보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참가업체 등록, 입찰에서 계약 및 대금지불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업체가 한번 등록하면 별도의 추가등록 없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2) 서비스 내용

#### 1) 통합입찰공고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공고 사이트(G2B)에서 얻을 수 있다.



2) 업체 1회 등록으로 모든 공공입찰 참가

업체가 입찰참가 시 기관별로 참가등록이나 신청을 하지 않고 G2B에 1회만 업체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3) 전자자금 이체

공급업체는 납품과정에서 검수와 대금지급을 동시에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검수 확인 후 One stop으로 대금지불을 처리하여 지불절차를 간소화하였다.

4) 조달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

온라인으로 입찰, 낙찰, 계약, 납품 및 검수확인, 대금지불 등 모든 조달진행상황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5) 국가목록관리

단일기관(조달청)에서 국가표준목록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은 제정된 목록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고 민간 및 Global Standard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물품목록 분류체계 및 품목 속성체계를 제정하였다.

(3) 평 가

한해 65조원에 이르는 공공분야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조작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즉, 건설업체가 조달청 직원과 공모해 응찰가를 낙찰가에 근접하게 전산조작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이다. 특히 조달청의 시스템 감리사 등 전문가들이 검찰조사에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산조작이 가능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sup>14)</sup>

---

14) 한국일보, 2005. 9. 28, A1.

###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1) 사업개요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며, 국민에게 보다 좋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2) 서비스 내용

##### 1) 민원서비스

민원인에게 제증명,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등과 같은 민원의 신청과 처리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적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 등의 학교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교육행정정보서비스(<http://neis.시·도교육청> 도메인)

교원과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는 교무·학사, 보건, 인사, 예산, 재산 등 27개 교육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환경을 제공한다.

##### 3) NEIS 지원 서비스 (<http://helpsys.시·도교육청> 도메인)

NEIS 사용과 관련하여 교원 및 공무원에게 NEIS 이용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제안 등의 장을 제공한다.

#### (3) 평 가

NEIS시스템은 SA시스템(행정관리시스템, Stand Alone System)과 CS시스템(학교종합정보시스템, Client Server System)을 도입하여 수기에 의한 학생정보의 작성 및 관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교육정보(학생정보를 포함한 기타 학교행

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SA시스템과 CS시스템과 달리 16개의 시·교교육청과 교육부에 있는 서버와 웹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학생·학부모에게 웹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정보의 수집방법은 수기에서 정보시스템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수기의 경우 학생정보의 수집은 학교 내에서 수집되어 이용되었으며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육의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학교 내에서만 이용되어 왔다. 예외적으로 학생정보는 학교가 2차자료의 형태로 가공하여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공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권과 헌법 제31조의 교육제도에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교육정보화가 가속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학생정보의 가치에 대하여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교육정보화는 수기에 의한 학생정보의 관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CS시스템이나 SA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들 정보시스템에 의한 학생정보의 처리는 학생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측면은 있었지만 학생정보의 활용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데 CD의 형태로 가공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에 이용되면서 학생정보의 이용이 문제되어 왔고, 종래 우리나라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NEIS시스템에 의한 학생정보의 처리는 학생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sup>15)</sup>

#### 4.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시스템

##### (1) 사업개요

국가의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정제도를 정보화환경에 맞도록 대폭 정비하였으며,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15) NEIS에 대한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대호, “교육정보와 입법과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입법과제』 2005. 11. 18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54면 이하를 참조.

## (2) 서비스 내용

### 1) 회계·결산업무 및 자금·자산·부채관리의 체계적 연계 처리

각 공공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중복없이 자동으로 연결처리하여 재정운영현황을 실시간 관리·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2) 전자 고지신청·고지열람·전자납부 서비스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전자고지 이용 신청시 자동으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되고 부과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을 통하여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 3) 중앙관서용 표준재정정보 제공

각 중앙관서가 소관의 모든 재정업무를 처리하고 종합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정업무를 실시간 연계처리하고 통합정보관리 및 분석기능을 수행한다.

### 4) 통합결산

중앙관서단위의 결산을 통합하여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및 예산결산내역이 포함된 정부전체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한다.

## 5. 중앙인사위원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1) 사업개요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반적 인사·급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 급여, 채용, 교육훈련, 통계 및 대공무원서비스, 시스템관리 등 7개업무를 단일의 시스템으로 통합시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인사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2) 서비스 내용

일반시민은 해당기관의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지원을 할 수 있고, 각종 통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6. 국세청 - 홈텍스서비스(HTS)

### (1) 사업개요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핸드폰을 이용하여 세무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 세무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국세민원창구』를 개별 납세자의 가정이나 사무실에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자는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2004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 33가지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 (2) 서비스내용

#### 1)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의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 2) 전자고지, 납부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목을 전자고지하고 납세자는 간편하게 계좌이체로 전자납부할 수 있다.

#### 3) 인터넷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6종의 증명민원을 발급하고, 의의신청 등 신고·신청민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처리하며, 처리기한이 4일이상인 일부 국세민원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 전자안내

각종 세무신고·고지·환급안내를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 (3) 이용방법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처음 한번은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암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서비스 중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납세자가 본인의 전자신고, 과세자료제출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제외).

공인인증서는 6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에서 2개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 7. 보건복지부 - 4대 사회보험의 포털사이트

#### (1) 사업개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보험 관련 민원서비스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회보험 부처 및 기관의 공통업무를 공동접수처리하는 포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 (2) 서비스 내용

##### 1) 공통업무 공동접수처리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 취득/변경/상실업무 및 사업장 적용/변경/탈퇴 신고 등의 공통민원을 4대 사회보험 각 기관의 어느 한 지사를 방문하여 일괄 신고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정보 포털서비스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 취득/변경/상실업무 및 사업장 적용/변경/탈퇴 신고 등의 공통민원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사회보험 안내, 민원안내 등을 알아볼 수 있고, 보험료 조회·납부 및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동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사업장, 민원, 장애인 등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관리를 위한 공동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4) 관련기관간 정보연계 체계구축

4대 보험관련 주관기관간 정보 연계 및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연계로 민원접수처리내역을 연계하여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갖추었다.

8. 특허청 - 특허넷

(1) 사업개요

특허행정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를 통하여 누구나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관련 모든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서비스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출원) 접수, 온라인 처리 및 처리과정 공개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관련 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출원서류는 온라인을 통하여 심사, 전자결재토록 하여 특허청 내부에서의 심사처리과정(통지서접수·발송여부, 내부 심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두 공개하고 있다.

2) 출원서 심사결과의 인터넷 발송 및 모바일 서비스

특허관련 민원출원서의 전자결재시 심사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자동통보하고 이동전화(모바일) 서비스로 통지서 발송사실 통보와 서류제출 기일안내 서비스 등 병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우편송부 요구시, 발송문 자동인쇄 및 우편발송하고 있다.

3) 인터넷 통한 특허정보 보급 및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특허관련 공개공보, 등록공보 등은 발간시점에 자동으로 추출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 자동발간(책자공보는 폐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원하는 기술분야만 추출하여 보내주는 Push-Mail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맞춤형 기술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 특허정보에 대한 무료 검색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9. 병무청 - 병무행정정보시스템

(1) 사업개요

병무업무 전과정을 정보화하여 각종 병무민원 서식을 간소화하고, 민원출원, 민원상담 및 민원서식 처리절차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비스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출원 및 처리결과 실시간 공개

재학생입영(소집)원 제출 및 취소,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소집) 희망시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처리결과를 핸드폰이나 e-Mail를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있다.

2) 각종 병무행정 정보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징병검사 결과 조회, 징병검사 일정 조회, 입영일자·입영부대 조회, 입영기일 연기원,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등 각종 병무행정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3) 병무민원 통합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지방청에 분산된 병무민원상담 전화번호(153회선)를 전국단일번호(1588-9090)로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야간 등 비근무시간에는 예약상담(Call-Back Service)을 통하여 병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10. 대법원 - 부동산등기전산화

(1) 사업개요

전국의 등기소가 보유한 종이 등기부(약4,500만 필지, 1억6,000만 쪽)를 전자자료로 변환함으로써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등 각종 등기업무, 수작업에서 전산작업으로 전환하였다.

(2) 서비스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발급예약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를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본형태의 열람 및 발급예약(법인등기)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실수나 오작동에 대응하여 동일한 등기부에 대해 재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신청현황 실시간 상태 확인

등기소에 신청한 등기신청에 대해 그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완료, 기입중, 기입수정, 교합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열람내역 제공 서비스

민원인들이 열람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자별, 일자별로 소재지 목록을 제공한다.

4) 미전산화 등기부목록 정보제공

전산화 등기소의 관할 미전산화 등기부에 대해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 정보를 목록형태로 제공한다.

(3) 평 가

인터넷 민원서류가 올스톱 하던 때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 2종도 발급이 중단되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하루 평균 4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애용되었다. 이들의 경우의 위변조방식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안업체와 프린터 드라이버 제작업체의 공동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보안업체가 26회에 걸쳐 열람·발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6)</sup>

【표 - 4】 인터넷 민원서비스 재개 현황(76종)

서비스 (시스템)명	기관명	발급서류 (민원사무명)
대한민국 전자정부 (G4C 시스템)	행정 자치부 (20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등본, 모부자가정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교육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승무원경력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
	건설 교통부 (5종)	도로점용허가증,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허가증, 국유재산사용허가증, 하천공사준공인가증, 하천점용허가증
	식약청 (9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허가증,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식품등의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식품영업(첨가물,조사처리업)허가증, 수입신고필증, GMP 지정서, 영문증명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 (33종)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납세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폐업사실증명(국/영문), 휴업사실증명(국/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33종
인터넷 전자민원 발급시스템	대검찰청 (9종)	고소(고발)장접수증명, 항고장접수증명, 재항고장접수증명, 항고기각증명, 재정신청서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제기사실증명, 재항고기각증명, 벌과금납부증명

16) 한국일보 2005. 9. 28. A8, “인터넷 등기부등본도 위·변조” 참조.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 I. 전자자치단체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국공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사정이 반영되어 운용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은 기본적인 것은 정부(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선도하에 국가자신의 손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일부사무조합인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공동개발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부유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는 각각 e-seoul, SMART강남을 활용하고 있다.

### II.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 1. 의 의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적 행정종합정보화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주민, 차량, 호적 등의 21개 업무를 법·제도 정비,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대폭 간소화·효율화하고, 기관간·업무간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 2. 서비스 내용

##### (1)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국 모든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의 20종의 증명을 언제 어디서나 발급하고 있다.

##### (2) 여러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주민등록, 토지 등 여러 가지 민원의 발급 및 처리를 하나의 창구에서 한번에 처리해 주고 있다.

(3) 전입신고로 모든 주소를 한꺼번에 처리

전입신고 한번만 하면 차량, 보건복지 등의 부문에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어 별도의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인터넷으로 안방민원 서비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서울시의 사례

#### 1. 인터넷과 민원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특별시는 1999년 4월부터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OPEN시스템)을 실시하였고, 그 후 대상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OPEN시스템은 공개대상이 되는 민원사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일종의 정보공개제도이다. 그리고 최대의 특징은 누구라도 보는 것이 가능한 점인데, 사전등록 및 패스워드 등은 필요하지 않고 사이트에 접근하면 공개내용을 보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업무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정부가 전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자정부 구축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sup>17)</sup> 또 서울시가 구축한 전자정부 노하우와 기술을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정보기술(IT)업체들의 해외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성적은 선진국 도시들에 못 미쳐 앞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17) “서울시, 전자정부 세계1위 『우뚝』 - 정보는 탄탄, 보안은 미흡”, (joins.com) 2003/11/17.

## 2.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 (1) 서비스 내용

#### 1) 전자고지서비스

전자고지란 우편으로 수신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 납부하여야만 했던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전자 E-mail로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 2) 전자신고납부서비스

신고납부는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연납, 지역개발세, 레저세등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납부하던 것을 본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민세신고납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으로 접속한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받아, 이용자등록을 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등록”을 행한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이용자” 항목에서 내용을 기재한다. 인원, 과세표준 등 입력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입력, 확인, 납부은행을 선택하여 각 은행의 인터넷뱅크의 절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 3) 전자납부서비스

납세자가 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즉 전자납부는 송부된 “납부통지서”를 이용한 방식과 통지서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로 납세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하게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받은 후, 홈페이지 면면으로부터 이용자등록을 행한 후 사용하는 것이다.

가. 통지서를 이용한 납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도메인(<http://etax.seoul.go.kr>)으로부터 접속하여 통지서(영수증통지서)의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4반기, 과세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납부금융기관의 하나를 인터넷뱅크의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나. 통지서없이 주민등록번호로부터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도메인(<http://etax.seoul.go.kr>)으로부터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선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발급을 받아, 생체인증(지문인식에 의한 보인인증)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의 발급을 받는 경우 “공인인증”을 선택하고, 생체인증을 등록한 경우, “생체인증”을 선택한다. 이 경우에 이용자등록을 행할 필요가 있는데, e-mail어드레스도 등록한다.

3.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서울시는 1998년에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OPEN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2001년 12월 1일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위생, 건축, 보상 및 도시계획 등 54개 업무처리과정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99. 10월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었고 2003년 국제반부패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1. 5월에는 서울시장의 UN 사무총장과 만나 전세계 UN 회원국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UN과 서울시간 공동협력성명을 체결하였다.

이 시스템은 행정과정상 인·허가담당자→계장→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단계와 주요시책의 경우에는 부시장→시장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넘겨받아 검토를 끝내는 날짜, 검토내용 및 앞으로의 예정사항등을 인터넷에 띄우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의 자기발전노력의 계기가 되고,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의 편의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법감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업무처리상황의 감시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규제집행 관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4. 서울시 강남구 사례

##### (1) 인터넷주민서비스발급시스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하의 25개 자치구 중의 하나이며, 기초자치단체이다. 경제, 금융, 무역,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테헤란로에는 대기업 본사와 IT벤처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IT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재정력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한 것을 배경으로 강남구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개발을 행하여, 전자자치단체의 추진을 선도하였다.

2000년에는 SMART강남이라는 슬로건하에 각 부서에서 발굴한 61개의 정보화사업의 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에는 강남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었다.

2002년에는 인터넷주민서비스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 및 직장에서 자신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2종의 주민서비스서류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 시스템은 나중에 시군구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편입되어 행정절차발급서비스로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어다.

2004년에는 유비쿼터스기술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제2차 강남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휴대전화, PDA, 음성ARS 등의 어디에서나 주민서비스서류를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주민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강남구가 개발·운영한 정보화시스템은 모두 110여종에 이르고 있다. 주민서비스용시스템이 60여종에 이르고 있다.

주요서비스로서는 전자결재시스템등의 행정효율화를 위한 시스템과 결재문서의 공개, 부동산의 종합정보서비스 등의 행정정보공개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주민서비스처리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주주의 시스템 등이 있다.

## (2) 강남 e-democracy정책

강남구정의 운영의 주요내용의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참가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강남 e-democracy정책은 “강남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강남구민이 직접참가하여 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28만여명의 강남의 이메일회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에 참가해서 주요시책, 관심사항 등의 현안업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 토론을 행하는 사이버행정참가시스템이다.

2001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사이버행정참가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용하는데, 운영형태는 이메일앙케이트조사시스템과 정책제안 및 토론방의 2종류가 있다.

이메일앙케이트조사시스템은 강남구민 또는 이메일회원 뿐만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강남구의 정책입안에서 집행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참가하여, 정책제안 및 토론방을 통하여 주민이 구정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여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강남의 이메일회원은 강남구민이 11만명, 타지역의 주민이 17만명 정도이다.

운영방법은 각부서에서 정책을 추진·결정하는 경우 질문안을 활용하여 전산정보과에 송신하면 전산정보과에서는 질문서를 작성업무의 성격,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표본수를 결정하여 이메일회원에게 발송한다. 그래서 질문회원이 진술한 의견을 받아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제시하여 주민자신이 참가하여 결정한 내용을 보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정책토론룸은 주민이 스스로 토론주제를 제안하면 구청에서는 제안된 의견을 선정주민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친다.



### (3) U-민원서비스 현황

올 2월 14일에 강남구청은 정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U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남구청이 준비하는 U민원서비스는 휴대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이동 중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가까운 편의점에 설치된 U프린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강남구청은 이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민원발급시스템을 모바일 기반으로 바꾼 'U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을 맡게 되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국내 3개 이동통신사와 각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 항목에 '전자정부 서비스'를 상징하는 코너를 만드는 협의를 마쳤다.

또 서류발급을 위해 한국HP 및 웨밀리마트와 업무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구청 관할 내 웨밀리마트에 HP의 'U프린터'를 설치하였다.

강남구청이 초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청 차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서, 토지 및 건축물 관련 공문 14개 종이지만, 행정자치부가 강남구청의 한달여 기간의 시범서비스를 평가한 후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을 하여 이용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sup>18)</sup>

## 제 3 절 외국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사례

### I. 외국의 전자자치단체의 개관

#### 1. 전자자치단체의 정의

공행정의 온라인화와 전자정부의 축진은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다. 각 국가들은 현재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아

18) 전자신문 2005. 2. 15일자 "U민원 서비스시대 열린다" 기사 참조.

나라 전자적 절차의 촉진과 입법 및 사법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전자정부의 촉진을 거의 실현하고 있다.<sup>19)</sup>

외국의 경우에 전자자치단체라는 특별개념은 없다. 전자정부로 얘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자자치단체를 정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군(카운티) 등의 정부레벨에 관계없이 전자정부라고 부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 2월에 발표한 정부의 “전자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전략에 관한 협의서”에 전자자치단체(local e-government)를 “전자자치단체의 실현이 행정서비스의 질 및 조직에 변혁을 미치는 절호의 기회”라고 높은 의의를 부여하였다.

독일에서는 전자자치단체(Kommunales E-Government), 가상사무소(virtuelles Rathaus), 전자사무소(e-Government), 전자타운(e-Tow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주에서는 e-Hessen(헤센주), e-NRW 또는 d-NRW이라는 호칭도 사용되고 있으며, 주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평가지표와 전자자치단체

외국의 전자자치단체의 정비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교조사가 존재한다. 미국의 악센츄어(Accenture 주식회사)는 2005년도의 전자정부 랭킹을 2005년 4월에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제1위 캐나다, 제2위 미국, 제3위 덴마크와 싱가포르, 일본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점수로 5위를 기록하였다.<sup>20)</sup>

또한 2005년 1월에 일본의 와세다대학 전자정부·자치체연구소가 발표한 전자정부의 구축도조사에 의하면, 1위는 미국, 2위는 캐나다, 우리나라는 11위로 나타났다.<sup>21)</sup>

19) Martin Eifert and Jan Ole Püschel, National Electronic Government, Routedge, 2004, p. 136.

20) <http://www.accenture.com/xd/xd.asp?it> 참조

21) <http://www.obi.giti.waseda.ac.jp/e-gov/news-rankings.html> 참조

## II. 주요 국가의 전자자치단체 정비사례

전자자치에의 정비를 위해 각국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 영 국

영국은 정보시대(information age)의 선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2005년까지 전자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포함하여 정보 및 통신 기술(ICTs)의 성취를 위한 수많은 정책실행안(policy commitment)을 만들었다. 영국에서 e-정부는 영국정부의 현대화프로그램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sup>22)</sup>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2001년부터 모델사업에 주력하여 선진적인 지자체의 조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전자자치단체의 특징은 강한 고객지향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금정책은 지자체간의 협력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23)</sup>

### 2. 오스트리아

연방국가인 오스트리아는 각주의 역할이 큰데, 연방정부도 1999년 이래, 국영전신회사의 매각이익의 일부를 충당하여 오스트리아 전역에 각종 IT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액의 약 15.5%가 다스말주에 충당되고 있다.

### 3. 미 국

전자 지자체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미국 워싱턴주이다. 워싱턴주는 지금까지 미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부운영 및 전자정부에 주는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워싱턴주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

22) 영국의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Martin Eifert and Jan Ole Puischel, op. cit., p.14. 참조.

23) 영국의 전자자치체에 대해서는 Martin Eifert and Jan Ole Puischel, op. cit., p. 23 이하 참조.

전인 1990년대초에는 주정부의 서비스와 사무의 통합적인 전자화, 주내의 네트워크부설, 특히 고가의 컴퓨터를 가지지 않더라도 주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KIOSK의 활용 등에서 선진사례로서의 평가를 받았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는 어떠한 정부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지사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도이념을 공표하고 그것에 기하여 전자정부의 구축을 실행하였다.

주지사는 전자정부의 의의를 “정부를 변화시켜 시민을 향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정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부는 본래 항상 효율적으로 각종 과제에 대해 응답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시민과의 계약사항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시민을 향한다”는 것은 “시민은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고객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궁극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지사는 『워싱턴주 디지털정부계획 - 시민과 시민의 주정부와의 관계를 변화』를 전자정부의 기본문서로서 작성하여, 단기간에 개정을 계속하였다.

전자정부구축의 지도이념에는 시민중심, 편리하게 사용하기, 업무혁신, 넷제, 비용과 복잡의 삭제, 능력 등이 있다.

이러한 지도이념등에 따라 워싱턴주의 전자정부는 이미 240여개의 서비스를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인 『@ccess Washington』에서 제공하고 있다.<sup>24)</sup>

#### 4. 독 일

독일에서는 e-정부를 위한 통일적인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sup>25)</sup> 독일에서는 연방경제노동성이 MEDIA@Komm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각주에서는 각각의 전자정부프로그램(특히 전자조달 및 전자지불 등)을 각 기초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및 독자의 조성프로그램에 의한 촉진을 도모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NEC 전자행정추진프로젝트(편집), 『電子政府・電子自治體入門』, 107-108면 참조.

25) 독일의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Martin Eifert and Jan Ole Puischel, op. cit., p. 119 이하 참조.

여기에서는 독일 브레멘시의 온라인 서비스(BOS bremen online services)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본다.

독일 브레멘시의 BOS(bremen online services)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지자체 정보화 촉진 프로그램인 Media@Komm이 모델도시로 선정한 3개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 서명카드를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전자적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4,400만 마르크를 투입하는 지자체차원의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에스링겐(Esslingen) 정보화동향분석, 독일 Esslingen시의 지자체 전자정부 프로젝트 참조, 뉘른베르크(Nuernberg)시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인 MEDIA@Komm의 대상도시로 선정하였다.

제1회 '가상시청'(virtuelles Rathaus) 컨퍼런스에서 브레멘시는 호적등록청(Standesamt)에서 혼인/출생/사망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전자화폐'(GeldKarte)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비용(12 마르크)이 지불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브레멘 시 홈페이지(www.bremen.de)에서 이사, 주택, 결혼 등 시민의 일상사에 기초하여 행정 및 기업관련 15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올 10월 15일부터는 버스카드 대금 역시 전자화폐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불이 가능하게 하였다. 총 70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올 10월경에는 본 bos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1만명의 브레멘 시민들에게 서명칩카드(Signaturchipkarten)를 발급할 계획이다.

본 서명칩카드는 브레멘시내 각 공공장소(시립도서관 등)에서 10 마르크의 보증금 납부 후 발급되고 있으며, 도서관, 인터넷 카페, 지역관청에서 공공 인터넷사용소를 설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명칩카드, 판독기, bos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며, 초기 1,000개의 서명칩카드가 발급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가, PC 애호가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패키지(SigKarte, 판독기, 설치 안내서, 소프트웨어)를 30 마르크의 보증금 납부 후 제공하는 것이다.

브레멘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새로운 행정운영모델(NSM: Neue Steuerungsmodell)을 도입하였다. 우선적

으로 도시정보시스템인 bremen.online의 확충과 지방관청에서 시청으로의 전환에 따라 시민 및 고객지향의 행정당국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행정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서 Media@Komm 도시공모는 본 프로젝트들을 개선, 통합, 보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행정에 정보기술 투자를 두배 증가시켜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된 행정개혁 조치와 전자상거래 촉진 조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조율하는 한편, 가능한 한 기술적으로 동일한 플랫폼하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브레멘의 기본계획은 전자적 서비스(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sup>26)</sup>

---

26) gcomin2000의 블로그에서 인용. 브레멘시 홈페이지 <http://www.bremen.de/haupt.html> 및 Media@Komm 홈페이지 [www.mediakomm.net](http://www.mediakomm.net) 그리고 bremen online services, [www.bos-bremen.de](http://www.bos-bremen.de) 참조.

## 제 3 장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 1 절 서 언

지금까지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법제연구는 대체적으로 단편적이고 개별법적으로 연구되었거나, 아니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법제 연구 등의 하나의 대상에 대한 관련법제연구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련법제 전반을 조망한 다거나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방법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몇 가지 유형별로 대별함으로써 관련법제 전반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는 첫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둘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셋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넷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령과 전자정부법령 그리고 전자서명법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기반이자 기초가 되는 법제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상당 부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정부 추진주체와 관련한 부분은 부처간 갈등과 반목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행정자치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조정됐다. 그래서 특별히 법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는 점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 민원서류의 위·변조문제가 불거지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정부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둘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식정보관리법,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등이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에는 위에 언급된 이들 법률들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다만, 중요한 법률만을 선택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는 말 그대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들로서 이들 법제도 상당 부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넷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에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가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사활이 이들 법제의 정비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위·변조 문제도 이들 법제와 유관한 것이다. 형법도 무관하지 않으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 유형별 법제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현황

#### 1. 개 설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기반이자 기초가 되는 법제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핵심법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1999년 1월에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행정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심의를 행하는데, 2000년 9월에는 “2001년도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정해져, ①국민에 대한 고객지향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고도화, ②행정의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경쟁력의 강화, ③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충실의 3분야에서의 각 중앙정부기관의 추진계획이 정하여졌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해서는 2000년 7월에 중앙행정기관 54기관간의 전자문서유통이 실시되어, 특히 전자문서유통대상기관은 2001년 9월에는 광역자치단체, 2002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모든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도입되었고, 전자결재율은 2000년 말에 54·9%, 2004년말에 93·5%로 나타났다.

전자정보의 위조 및 변조방지에 관해서는 1999년 7월에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전자서명인증센터관리체계의 최상위인증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개설하였고, 공인인증기관의 디지털서명검증기에 대한 인증업무등을 개시하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2000년 4월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상담업무, 해킹방지등의 초동대응, 바이러스정보의 제공등을 개시하였다.

정부·행정관련 인증기반의 구축에 관해서는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대비하여 정부전자공인인증관리센터의 확충, 내용증명시스템·인증효력확인시스템·시점확인시스템의 구축, 국민간의 인증기반 제휴를 위한 정부가교인증센터의 구축이 행해졌다.

또한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 추진방안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 28일에 성립되었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004년 11월 전자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의 적용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늘려잡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없어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할 때 민원서류감축이 불가능하였다. 둘째,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가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통계·문헌정보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되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상당수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과 같이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정보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정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3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도 2005년도 국가정보화사업 중 행정정보화 분야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약 55억원을 투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기존의 26종에서 34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까지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sup>27)</sup>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실현사업의 촉진,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민주성의 향상, 지식정보시대의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학계에서 제기된 많은 지적들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완비된 법률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U정부(Ubiquitous-Government)를 선도하는 핵심법률로서 그 위상을 확실히 하고 있다.

## 2. 정보화촉진기본법령

### (1)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sup>28)</sup> 기본법으로서의 1차적 임무는 정보화시책과 다른 정보화관련법의 이념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육성하는데 있어 2004년에 전

27) 김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02』 2005. 2. 3. 제20호 참조.

28) 기본법에 대해서는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5호(1993. 12), 275면 참조.

자정부법<sup>29)</sup>을 제정한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정보기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만을 제시하고 실제 기반사업의 구축은 통신사업자 등의 민간참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하는 민간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정부가 정보화정책을 직접 주도하면서 민간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국가가 나서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민간 수요창출을 위해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촉진법의 성격으로 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정보화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정보화촉진정책 드라이브가 주효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화라는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촉진을 넘어서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현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화가 일정한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가는 달성의 대상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로써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단순한 촉진법의 성격에서 벗어나 일반법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조의2).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제5조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행정계획으로 국가정보화정책을 좌우하는 키(key)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9) 미국 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 추진체계(제101조, 제202조), 전자정부기금(제101조), 정보이용의 활성화(제204조, 제207조, 제212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제208조), 국민의 정부참여와 정보격차해소(제206조, 제213조 및 제215조),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제203조, 제214조, 제209조),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제202조, 제210조), 정보보안(제301조 내지 제305조), 비밀정보의 보호 및 통계의 효율화(제501조 내지 제525조), 사법부의 정보화추진(제20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전자정부법에 대해서는 이규정·구병문, 『미국 전자정부법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3 참조.

## (2)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주요내용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5조제1항·제2항).

기본계획에는 ①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③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④재정·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⑤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⑥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⑦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⑧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⑨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⑩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⑪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⑫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⑬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⑭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⑮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⑯기타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항).

## (3)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며(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3항), 교육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 (4) 정보의 독점방지와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 확대 및 유통 촉진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정보의 독점방지와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 확대 및 유통<sup>30)</sup>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제13조제1항). 아울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사항으로 ①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유통 및 제공을 위해서이다(제2항 참조).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처리 및 대국민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간에 이를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권한을 주고 있으며(제12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로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할 것을 들고 있다(제2항 참조).

#### (5) 정보보호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보호”를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2조제4호), 정부로 하여금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제14조)하도록 하고 있다.

#### (6)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과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정부는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호환성의 확보등을 위하여 정보통신응용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제29조제1항).

30) 행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김재광, “행정정보의 유통에 따른 법적 과제” 참조.

또한 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9조제2항).

#### (7) 정보화책임관의 정보자원관리책무

그리고 정보자원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또 한가지 사항은 정보화책임관제도(CIO)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법 제9조의2).<sup>31)</sup>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업무”를 정보화책임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등을 분장한다.

#### (8) 한국전산원의 설립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화추진 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을 설립하였다. 한국전산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표준화 지원,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정보문화의 확산 지원, 공공기관의 정보화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제10조).

현재 한국전산원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 각종 전자정부 관련시책을

31) CIO에 대해서는 김재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방안” 참조.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제22조제5항 전단).

#### (9) 정보화추진위원회

##### 1) 성격과 구성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동법 제9조). 여기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행정의 실체상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은 그 종류·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결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문기관 이나 심의기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인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조직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하도록 한 것은 중앙행정관청의 설치를 법률로 한다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1문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이해되고, 동시에 행정조직법률주의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말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합의제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위원회를 말하기 때문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독립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비추어볼 때 정부조직법 제5조상의 행정위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분류에 따를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에 관한 최고심의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제8조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동조 제3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동조 제4항).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sup>32)</sup>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sup>33)</sup>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조).

## 2)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추진기본계획,<sup>34)</sup>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동법 제9조).

특히 정보화기본계획에는 ①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③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2)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등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임무를 관장하는 1급 공무원이 된다(동법시행령 제6조).

33) 분과위원회는 행정·교육·과학기술·금융·국방·공안·산업정보·사회간접자본·정보보호·지방자치·환경·보건복지·문화·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시행령 제7조).

34)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정보화의 목표를 ①정보화를 통해 지역간·계층간 격차 등 압축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확고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②2010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선진국과 거의 동시에 고도정보사회 단계에 진입하며, ③2010년까지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여 2000년까지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정보화기반을 조성하고, 2005년까지 민간주도로 정보활용을 확산하며, 2010년까지 정보활용을 고도화한다는 데 두고 있다.



④재정·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⑤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⑥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⑦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⑧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⑨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⑩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⑪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⑫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⑬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⑮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정보화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

각 부처에서 작성된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추진실적평가보고안, 그리고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안건들은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각 안건마다 3단계의 각급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각급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제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식행위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sup>35)</sup>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 모두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7조제6항).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기

35) 정보화추진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적이다. 기본계획은 물론, 각 분야별로 5개년간의 시행계획과 매년의 시행계획을 최고기구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반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5개년계획이 끝날때까지 전체적으로 90단계 이상, 매년 평균 1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서 paperwork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라용길, “효율적인 국가정보화추진체계 정립방향(하)”, 『행정과 전산』 98. 4/4(12월), 49면 참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 또한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도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각급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자문위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조직구성상의 중복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각급 위원회의 위원수를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5인 이내(동법 제8조제1항), 실무위원회는 35인 이내(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분과위원회는 대략 11명-33명으로서 평균 20명 정도이다.

### 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

#### (1) 전자정부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자정부법의 입법목적은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정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자문서 등을 통한 업무수행의 일반적 절차를 마련하고, 기관들이 그러한 전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계획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공무원들이 정보화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교육받고 문서업무를 전자화하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전자적으로 수렴하는 등의 행위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sup>36)</sup> 따라서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4조제1

36)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김재광,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참조.

항). 그리고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등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항).

전자정부법은 전자적 업무처리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행정기관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에 따라서는 일반적 절차와는 상이한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전자적 처리절차를 그 정보화시스템에 맞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국세기본법 등은 전자적 세무신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이렇게 개별법에서 직접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법을 따르도록 하였다(제3조).

## (2)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으로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등을 들고 있는데,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등이다.

### 1)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6조).

2)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제7조).

3)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제8조).

4) 행정정보공개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제9조).

5)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6)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7)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

8)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

9)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제14조).

(3)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의 의의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 행정민원인의 의견수렴, 민원서비스, 민·관 간의 전자문서 처리 등의 응용서비스를 통해 원격·전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는 기존의 행정관료제가 안고 있는 한계였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객지향성(customer-oriented)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객지향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37)</sup>

37) 문신용,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한국행정연구』 1999년 봄호(제8권 제1호), 116면. 참고로 미국의 전자정부의 개념은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정부의 행정능률을 최고로 하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접근방법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의 내용으로는 ①전자적 민원처리, ②비방문민원처리, ③전자적 고지·통지, ④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 2) 전자적 민원처리

### 가. 전자적 민원처리의 의의

전자적 민원처리는 국민들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전환을 이룬 것이다. 전자적 민원처리는 주로 신청·신고·제출 등의 전자화로 표상된다.

신청·신고의 전자화는 ①신청서 등을 송신하는 사람이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본인확인), ②데이터를 송신할 때 회선에서 데이터 누설 등의 방지(보안확보), ③데이터 송신자 및 수신자 쌍방의 송신·수신확인(송수신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확인, 데이터번호, 데이터누설방지, 데이터 수정·파손의 방지 및 발신·수신 증명기능이 있는 암호기술, 이것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불특정한 개인이 하는 신청·신고로 신청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의 이용 등 본인확인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신청·신고 등을 전자화하여 각 부처에서 자동접수 등에 의한 접수 처리시간의 연장 및 24시간 처리추진, 시스템의 네트워크화 등에 의한 신청지역 제한 완화, 접속 포인트의 확대 등 편리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 나. 전자문서로의 신청

전자정부법 제29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제33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항),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sup>38)</sup>

#### 다.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전자정부법 제33조의2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자들이 법규정의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자가 불필요하게 발급받은 민원서류가 무려 2억 6000여만통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 실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38) 전자문서에 대한 탁월한 분석으로는 오병철, “전자문서와 입법과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입법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71면 이하를 들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비서류와 관련 민원사항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제5항).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 -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구비서류의 명칭,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시행령 제40조제3항).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제4항).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제5항).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동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한다(제6항).

### 3) 비방문민원처리

#### 가. 의 의

비방문민원처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하며 민원처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방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이러한 비방문처리제도는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능률의 획기적 향상을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9)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123면.



#### 나. 전자정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제34조제1항),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한편 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9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항).

#### 다. 전자민원담당관 및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의 임명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

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제40조제1항).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의 접수·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

#### 4) 신원확인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제3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없다(제43조)고 규정하여 불필요한 신원확인서류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 5) 전자적 고지·통지

전자적 고지·통지란 기존의 고지서·통지서 등을 종이문서로 고지·통지하던 것을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통지가 전자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법은 법현실을 감안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고지·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제36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이 고지·통지 등을 전자공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 수신자의 인적사항,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수신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제44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이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한하여 전자적 고지·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digital divide”문제와 직접 부딪히게 된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래적으로는 이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 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가. 의 의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이란 민원관련 법령, 민원처리절차 및 기준, 민원처리과정,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일 공표되는 보도발표자료,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 등을 광범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제공내용의 충실, 실시간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서·연차보고서 등 행정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정정보에 대해 인터넷, CD-ROM 등 전자적인 수단·매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통계정보 등 사회적인 이용가치가 높은 행정정보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데이터표준화 등을 실현하면서 전자적인 수단·매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행정업무인 행정정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한 투명

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응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의 행정정보서비스는 다기능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국민위주의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며 수단이 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있어서 맞춤 서비스화를 목적으로 전자화 내지 유비쿼터스화 정부 등이 개인화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인 국민의 정보가 어떤 형태로 사이트에 제공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설사 고객인 국민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주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화된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지라도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개인화된 정보를 기준 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나. 제공정보 및 제공방법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항)고 의무지우고 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5조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호 -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 의 정보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6조는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와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1항). 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성질상 동일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합한 행정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제2항).

#### 7)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

전자정부법은 수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벌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8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제3항).

8) 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39조).

(4)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규정

행정정보(공공정보) 공동이용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되는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 제정되어 행정정보(공공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령의 체계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본래의 정보제공목적과 달리 이용될 경우 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sup>40)</sup>

1) 적용범위

가. 법률의 적용범위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따라서 전자정부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용되며, 당연히 행정정보공동이용도 이들 기관에 적용된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4호).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국회·법

40) Ann Cavoukin and Don Tapscott, Who Knows : Safeguarding Your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New York : McGraw-Hill, 1996.

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나. 시행령의 적용범위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따라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행정정보 유통 및 관리상의 책무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전자적 업무처리에 관한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정보 유통 및 관리가 전자화되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행정관리의 전자화는 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촉진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법을 운영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행정기관에 책무를 지우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 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담당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과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제5조).

나. 조정 및 지원체계의 정비를 통한 정보유통관리의 효율화

① 조정 및 지원체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그 자체가 부처단위의 기관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부처내의 조직간에도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주체는 물론 기관내에서 전반적인 정보관리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정부의 도정에서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이용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DB의 공동이용과 정보유통을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눈으로 보아서는 단일 기관이 하나의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관리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조정체계의 정비는 정보공동활용이 다수의 기관이 관여되는 복잡한 업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제공기관과 정보이용기관간의 각각 상이한 입장과 유인체제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업무협조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권위있는 기관의 조정, 통제, 그리고 지원이 요구된다.

② 조정신청사유

국가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은 침묵하고 있다.

③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서의 전자화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6조제1항). 따라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제16조제2항).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수단 - 전자이미지서명 -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송신시점이 송신자의 컴퓨터 서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받



송시기로 하면서(제19조제1항).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를 전자공문서의 도달시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전자서명의 사용도 가능하게 하였는데(제20조제1항), 전자관인을 이용하면 행정기관 및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뿐만 아니라 처리과별로 문서를 신속하게 직접 발송할 수 있어 문서유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④ 유통가능한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은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로 “1.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통계정보·문헌정보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를 예시하고 있다. 법문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는 매우 신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종래에는 ‘각종 민원서류의 내용을 이루는 행정정보’라고 규정하던 것을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로 고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공동이용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 통계정보·문헌정보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정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정보,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정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정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정보,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의 처리정보,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처리정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제8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 대상정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조문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보공동이용의 실무적 활용도가 집적되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법조문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여 위 제8호 규정의 의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 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의 경우도 신속하게 공동이용의 대상으로 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장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 ㉕ 공동이용대상 제외정보

그러나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㉖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군사·외교 및 국가정보원에 관한 사항이며, 비밀은 보안업무규정상 1급 내지 3급 비밀을 말한다. 국가

안전보장 관련행정정보 등을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종래의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이 단지 유사정보를 정보화일 구축·폐지시의 사전통보의무로부터 면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지니는 행정정보는 오히려 공동이용을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그 제외 대상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㉞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에 준하는 행정정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대외비를 의미한다.

⑤ 정보유통의 추진체계의 핵심으로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자정부법시행령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이용센터(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즉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하는데(법 제22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영 제29조제1항).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국전산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법 제22조제5항 전단). 물론 이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해야 한다(법 제22조제5항 후단).

⑥ 유통정보의 질적 제고를 위한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당해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법 제23조).

또한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정보와 관련된 지식을 정부조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변화, 공무원의 보직이동, 시간의 흐름 등과 무관하게 정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부처별로 산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각 부처별 담당자의 자료 수집에 따른 시간낭비를 줄이고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 ⑦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송신방법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즉,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3항).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1.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전자관인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2.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협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3.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와 같다(영 제 18조).

#### ⑧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 ㉠ 행정정보의 목록작성, 배포 및 수요조사 실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법제22조제1항), 작성된 목록을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

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영 제19조).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보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영 제20조).

㉠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2조제3항).

⑨ 문서업무의 감축과 대상

㉡ 문서감축의 대상

첫째, 행정기관 내부의 감축대상이 되는 문서는 결재, 회의, 보고, 지시, 회람, 교육 등에 사용하는 문서 등이다. 둘째, 행정기관상호간의 감축대상이 되는 문서는 보고, 협의, 승인, 지시, 회의,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 등이다. 셋째, 민간에서 행정기관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문서는 민원신청,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 등이다. 넷째,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문서는 민원회신, 납세고지, 고시·공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 등이다.

㉢ 종이문서의 감축방법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종이문서의 감축방법으로는 의사결

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각종 신청·신고·제출 등의 간소화·전자화, 각종 고시·공고 등의 전자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그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등이다(법 제40조).

#### ㉔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자정부법 제40조에서는 종이문서의 감축 의무화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문서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①법 제40조 각 호의 방법을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방향, ②문서업무 감축목표의 기준 설정, ③문서업무의 감축대상 선정, ④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1조-43조).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①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②민간과 행정기관간에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③문서업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④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기관은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표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표된 감축대상문서의 감축실적을 매년 반기별로 파악하여 감축목표와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인터넷에 공표하거나 감축실적을 인터넷에 공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식’을 따른다.

#### ⑩ 문서감축위원회의 설치

우리의 경우 이제 점차적으로 문서감축을 통한 “문서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점차 확립되어가고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서업무에서 전자문서업무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문서업무를 감축하는 것은 전자정부 실현의 열쇠라 할 수 있다.<sup>41)</sup> 그 동안 문서업무감축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서 문서업무감축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되었다.

문서업무감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분류에 따를 때, 심의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심의사항으로는 문서업무 감축계획, 분야별 대책회의간 정책조정, 문서업무 감축에 관련한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문서업무 감축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기타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 44조에서는 문서업무감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쇄신 및 전자화 등을 통해 종이문서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정부적으로 문서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문서감축의 추진을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문서감축위원회·법원문서감축위원회·헌법재판소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법 제44조제9항).

이들 기관의 문서감축위원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기관 간 교환자료나 민원구비서류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법 제44조제7항).

---

41) 임지봉, 앞의 논문, 36-40면 참조.

[표-1] 현행 공동이용 가능 대상정보(24종)

제공기관	정보명	열람방법
행정자치부 (4종)	주민등록등(초)본	실시간열람
	토지(임야)대장	실시간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실시간열람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	실시간열람
건설교통부 (6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실시간열람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실시간열람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실시간열람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실시간열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실시간열람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실시간열람
대법원 (4종)	건물등기부등본	실시간열람
	법인등기부등본	실시간열람
	토지등기부등본	실시간열람
	호적등본	실시간열람
국세청 (6종)	국세납세증명서	준실시간열람
	사업자등록증	실시간열람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신청건 열람
	납세사실증명	민원인신청건 열람
	휴업사실증명	실시간열람
	폐업사실증명	실시간열람



제 2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공기관	정보명	열람방법
국가보훈처 (1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실시간열람
병무청 (1종)	병적증명서	실시간/준실시간 열람
법무부 (2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실시간열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실시간열람

[표-2] 공유 추진 대상정보('06.7월, 34종)

순번	정보명	소관 행정기관	추진
1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자치부	'05
2	토지(임야)대장	행정자치부	'05
3	지방세납세증명서	행정자치부	'05
4	자동차세납세증명서	행정자치부	'05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설교통부	'05
6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건설교통부	'05
7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건설교통부	'05
8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교통부	'05
9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교통부	'05
10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교통부	'05
11	호적등본	대법원	'05
12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05
13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05
14	토지등기부등본	대법원	'05

제 3 장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 번	정 보 명	소관 행정기관	추 진
15	국세납세증명서	국 세 청	'05
16	사업자등록증	국 세 청	'05
17	소득금액증명	국 세 청	'05
18	납세사실증명	국 세 청	'05
19	휴업사실증명	국 세 청	'05
20	폐업사실증명	국 세 청	'05
21	국가유공자증명·확인(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05
22	병적증명서	병 무 청	'05
23	출입국사실증명서	법 무 부	'05
24	외국인등록증	법 무 부	'05
25	운전면허증	경 찰 청	'06
26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건복지부(시군구)	'06
2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설교통부	'06
28	법인인감증명	대 법 원	'06
29	건축허가서	건설교통부	'06
30	여권	외교통상부	'06
3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외교통상부	'06
3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보건복지부	'06
33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국가보훈처	'06
34	광업원부	광업등록소	'06

3)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련규칙 검토  
 행정정보(공공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마련되  
 어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

방자치단체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각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관련규칙을 통해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회규칙

①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6조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사무처직제

국회사무처직제 제14조제2항은 국회기록보존소장의 분장사항으로 국회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제2호),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제4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은 제52조에서 “보고통제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급기관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에서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민간기관과 자료의 상호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중앙자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자료관리기관은 당해 자료를 생산한 기관에 대하여 교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4장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는 “행정정보의 송신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해기관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제19조는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장이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0조는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

는 행위,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는 “행정정보의 제공중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그밖에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1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의 이용금지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분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조건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이용금지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행정정보의 제공중단·반환요구 또는 이용금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4조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구축계획, 공동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파일의 명칭·제공기관·이용목적·이용범위·이용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현황,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거절이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중단·이용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정보파일의 명칭·제공기관·이용기관·이용범위·거절사유·이용금지사유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분담,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연계·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4장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는 “행정정보의 송신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각급위원회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등이 있다.

제18조는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9조는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는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는 “행정정보의 제공중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그밖에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

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비용청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및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는 “비용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가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출되는 기관으로 한다.

제24조는 “비용청구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급위원회가 제공기관으로서 이용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당해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당해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는 “행정지식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시스템(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내부적 시스템으로서 각급위원회 소속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관리하여야 한다.

#### 4) 개별법상 행정분야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

개별법상 행정분야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찰행정분야

①경비업법시행규칙 제3조(허가신청 등),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2항, 제6조(허가갱신)제1항, ②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40



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2항, 제41조(채용후보자 등록) 제1항, ③공중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1항, 제3조의2(변경 신고) 제1항, ④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항,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허가신청) 제3항,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제16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제3항,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1항,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소지허가신청) 제5항, ⑥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1항,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2항 등

나. 경제행정분야

①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조(인가신청서) 제2항,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4항 등

다. 개발행정분야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토지매수청구서의 제출서류),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제3항,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1항 등

라. 환경행정분야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1항,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2항, 제25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신청 등) 제2항, 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제2항,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항, ③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1항,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제1항,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④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1항, 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1항,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1항, ⑥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1항, ⑦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1항 등

마. 조세행정분야

①지방세법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②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2항, 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항 등

바. 교육행정분야

①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제13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제1항, 제14조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제1항,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③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제2항,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등

사. 군사행정분야

①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제1항, ②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제4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신청) 제1항 및 제2항, ③병역법 시행규칙 제43조 (복무기관등의 재지정등) 제1항, 제48조 (지정업체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1항, ④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지정업체의 선정추천등) 제4항 등

아. 건설행정분야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제1항,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등록의 신청) 제1항, ③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제3항, 제8조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 제2항, ④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제2항, ⑤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3항, 제22조 (건축사업무신고), 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4항,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제3항,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항

#### 자. 사회보장행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7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제1항,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 ③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항, ④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제1항,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1항,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2항,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24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2항, ⑤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식) 제2항, 제9조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서식) 제2항, ⑥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항

#### 차. 문화행정분야

①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발굴허가신청), ②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 4. 전자서명법령

#### (1) 전자서명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자서명법이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제2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①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②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③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제3호).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제4호).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제5호).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제6호).

## (2) 주요내용

### 1) 전자서명의 효력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제3조제1항).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제2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제3항).

### 2)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은 후술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 3)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항).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항).

#### 4)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3조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 5) 개인정보의 보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 6)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995년 8월에 정보보호센터로 출범하여, 2001년 7월에 현재의 지위로 격상되었다. 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를 수행한다(제25조제1항).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제3항).

정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②정보보호 기술 개발, ③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④정보보호에 관련된 표준 및 기준 연구, ⑤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연구, ⑥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⑦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자문, ⑧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⑨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연구, ⑩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⑪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운영, ⑫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제4조) 등이다.

#### 7)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

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한다(제26조의2).

#### 8)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제26조의6제1항).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2항). 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온라인 기반관련 법제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령정비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자정부법상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권한의 민원업무 제한문제

첫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권한이 민원업무로 제한문제되어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각종 행정정보를 정부기관간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행정기관에 내야 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구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권한이 민원업무로 제한되어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상당수가 이러한 제약으로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해야 하고,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지원센터 내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두고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이용기관간 정보 중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토지대장·지방세납세증명서·호적등초본·사업자등록증명원·납세사실증명원 등 20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이용권한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된 민원업무 담당자로 제한돼 있으며, 행정업무 담당자가 이용하려면 원본정보를 가진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업무별 행정정보 이용범위와 권한 등이 정의돼 있지 않다 보니 민원사무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각종 행정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정보 보유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인에 대한 서류 요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으로 등록된 20개 정보도 각종 제약으로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법령상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연간 1,000건 이상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이용대상이 제한돼 있는 데다 원본대장에 있는 주소이력·한자성명·병역사항 등이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다. 토지대장 역시 토지표시연혁·소유자연혁·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기준일 등의 정보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시군구 자료입력 과정에서 실데이터와 시스템 데이터간 몇시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역시 실데이터와 시스템 데이터간 하루의 시차가 발생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등은 해당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비로 서비스가 일부 시군구에 국한되고 있다. 호적등·초본은 성명과 본관의 한자가 서비스되지 않고, 국세청이 서비스하는 국세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은 업무시간 외에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자정부분야의 한 전문가는 “각 부서가 별도로 공동이용 정보를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 및 민원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 수요를 파악해 업무별 공동이용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안



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업무별로 볼 수 있는 행정정보의 수준을 분류해 명확한 권한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의 형해화

정부는 이미 2002년 11월에 민원서류 20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내는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였다. 즉, 전자정부법 제33조의2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민원서류) 제출 생략’이라는 내용을 공무원 업무지침인 ‘민원사무기준표’에 명시하였다. 행정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민원서류는 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시군구와 읍면동은 최근까지 모든 서류를 민원인이 내도록 하였다.

현재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289종으로 연간 발급량은 4억 4414만여통(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따라 민원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등 20종으로 발급량으로는 전체의 83.7%(3억7165만6000여통)에 이른다. 민원서류의 70%가량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발급한 4억 4414만2000여통 가운데 2억6000여만통을 불필요하게 발급받도록 했다는 얘기가.

이러한 현상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갖추면서 법령과 사무지침을 고치고 모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전자서명’이라는 인증서까지 내줬지만 실제 사용하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민원서류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번거로워 민원인에게 서류를 떼어오라고 하면 그만이었다.<sup>42)</sup> 민원인을 위해 서류를 출력할 경우 공무원의 이름을 서명해야 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33조의2(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의 개정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를 보다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 3. 정보제공기관에만 정확성 유지책임 부여문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에 당해 정보의 정확성 유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제공기관에만 정확성 유지책임을 부여한다면 이들 기관들은 행정정보의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에는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체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허가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목적외 사용에는 명확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sup>43)</sup>

42) 동아일보 2005년 11월 18일 A12면 “민원서류 공유시스템 3년째 낫잠 - 안떼도 될 서류 년 2억통 헛수고 -” 참조.

43) 김철, 전계논문 참조.

#### 4. 국가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문제

전자정부법이 국가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중요성과 국가기관간 자발적인 협력이 그리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법체계상 지위문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는 정보유통의 추진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은 이를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센터의 설치는 “본질적 사항” 내지 “중요사항”으로 보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6. 행정정보의 수요조사의 의무화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수요조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실질화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취지 - 생각건대, 수요조사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 를 감안할 때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제 3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현황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 지식정보관리법령 등이 있다. 물론 전자정부법 등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부언을 하지 않기로 한다.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 (1) 민원사무처리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민원인이라 하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민원사무라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공정·정확하여야 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하여야 하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행정업무 전체를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참조).

따라서 민원의 업무영역은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그 처리과정을 확인·감독하며,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역할과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민원안내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제반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원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민원사무처리와 합리적인 민원제도의 시행으로 각 업무영역의 민원사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전자적 민원처리는 국민들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이룬 것이다. 전자적 민원처리는 주로 신청·신고·제출·통지등의 전자화로 표상된다.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의 민원사무에는 ①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③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⑤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 해당한다(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그리고 여기의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제3조).

## (2) 주요내용

### 1) 민원의 신청과 접수 및 처리결과와 통지

#### 가. 민원의 신청

현행 민원사무처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제4조제1항). 그리고 시행령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민원사항의 접수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하는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문서과)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민원실·문서과 또는 처리 주무부서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

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7조).

#### 다. 민원의 전자적 이송

민원사무처리법은 민원의 전자적 이송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동일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항).

그리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제4항).

#### 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활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2005년 6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38종을 발급(1,097대 운영 중)하고 있다.

#### 마.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불확정개념은 사용하지 말고 보완요구기간처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민원실등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15조).

#### 바. 기관간의 협조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은 동일행정기관내의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제2항).

#### 사.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의 경우에도 종이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33조는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 아.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시행령 제33조의2는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출력매수의 제한조치, 위·변조방지조치,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그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의 조치를 취하여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본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제2항).



자. 전자민원창구

시행령 제38조의2는 전자민원창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호(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전자민원창구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차. 고충민원의 신청

시행령 제50조는 고충민원의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관계행정기관의 명칭,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제2항).

카. 민원사항의 이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제1항).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항중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 다.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56조제1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2항).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 (1) 정보공개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자정부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청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처리절차 및 기준, 민원처리과정,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일 공표되는 보도발표자료,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 등을 광범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제공내용의 충실, 실시간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보유 정보 중 공개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적극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의 활용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백서·연차보고서 등 행정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정정보에 대해 인터넷 뿐만 아니라 CD-ROM 등 전자적인 수단·매

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보유정보의 자발적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정보공개에의 청구, 심사, 제공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통계정보 등 사회적인 이용가치가 높은 행정정보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데이터표준화 등을 실현하는 것은 체계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수요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행정업무인 행정정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응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의 행정정보서비스는 다기능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 전자적 행정정보서비스는 국민위주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며 수단이 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있어서 맞춤 서비스화를 목적으로 전자화 국가 등이 개인화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인 국민의 정보가 어떤 형태로 사이트에 제공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설사 고객인 국민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주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화된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지라도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화된 정보를 기준 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미국의 알라스카주는 가능한 한 전자적 형태에서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의무를 행정기관에 과하고 있다. 즉, 요구가 있으면 유상으로 전자적 정보제공서비스를 행할 것을 행정기관에 부요하고 있다.<sup>44)</sup> 이러한 경우에 일부의 자에만 전자적 정보제공서비스를 하고, 다른 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sup>45)</sup>

44) Alaska. Stat, §09.25, 115(a).

45) Id. §09. 25, 115(h).

한편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전자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성립된 행정각부와 관련된 독립된 정보제공기관(예, 프랑스문서국)이 제공할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사기업이 행할 수 있으며 사기업 또는 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공공정보를 입수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sup>46)</sup>

정보공개법 제15조는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제1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2항).

## (2) 주요내용

### 1) 정보와 공개의 의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記錄’된 사항”을 말하며(제2조제1호),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

여기서 “記錄”의 의미에 대해서는 첫째, 행정기관이 청구자료를 작성 또는 입수하고 있는 것, 둘째, 공개청구시에 행정기관이 당해자료를 통제하고 있을 것(여기서 통제라는 것은 당해기관이 공무상 정당하게 소유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

46) 박균성, 앞의 보고서, 74면.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6조제2항),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제1항).

## 2) 정보공개의 온라인 청구방법 및 대상

### 가. 정보공개의 온라인 청구방법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으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에 의해 제출하거나 우편·문서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컴퓨터통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컴퓨터통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종이문서에 의한 공개청구와 달리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6조).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도 FOIA청구를 팩스밀리나 전자메일로 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행정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며,<sup>47)</sup> 연방통신위원회,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 국방부, 중소기업청, 전국항공우주국, 전국과학기금, 전국해양대기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가운데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미합중국행정회의의 권고<sup>48)</sup> 등의 영향을 받아 신청에 한하지 않고 규칙제정절차에 있어서의 Public Comment 등, 행정절차일반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그 경향은 오늘날에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 나. 정보공개 대상

외국의 정보공개법제도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 전자적 기록도 포함한다는데 대체로 異論이 없다. 특히 미국의 전자적정보공개법(The

47) FOIA Update, Summer 1987, at 1-2; FOIA Update, Winter 1998, at 6.

48) Federal Agency Use of Computers in Acquiring and Releasing Information, 1 C.F.R §305. 88-10.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 of 1996. 이하 “EFOIA”라 한다)<sup>49)</sup>을 비롯한 대다수의 주의 정보공개법은 기록매체의 물리적 형태 및 특징을 묻지 않고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적 기록도 대상으로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몇몇 주의 정보공개법은 특히 전자적 기록에 언급하여 그것이 대상기록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50)</sup> 즉 전자정보자유법은 제2조제2항에서 공개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적 기록…으로서, 당해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비공개 기준은 애매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의 경우에 2000년 개정되기 전의 1978년에 제정된 『행정과공중의관계개선조치에관한법률』 제1장은 행정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의 자동처리의 형식을 통한 결정이 포함되었었다(제1조). 그러나, 전자문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2000년 4월 12일 1978년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다. 공개방식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복사이외에 행정기관의 기술적 가능성의 한계내에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매체에 기초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복사의 교부도 가능한 방식으로 추가되었다.<sup>51)</sup>

그리고,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의 집행을 위해 제정되고 행정문서의 공개방식에 관한 2001년 6월 6일 명령 제2001-493호 제1

49) 미국 연방정부는 1966년에 제정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 1974년, 78년, 86년에 개정)을 30년 결과한 1996년에 행정기관의 전자정보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하는 개정을 행하였다. 급속히 발전한 전자매체정보가 FOIA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富井幸雄, “情報自由法(FOIA)における行政機關概念” 『季刊行政管理研究』, 2001. 3, 53면).

50) 예를 들면, Rev. Stat. Ann. tit. 1, §402.3 ; Md. Code Ann., State Gov't §10-611(f)(ii)2.

51)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조는 공개문서의 복사는 서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컴퓨터매체 및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신청인이 컴퓨터매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문서의 복사물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은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2)</sup>

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라. 행정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징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38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법 제38조제3항).

마. 단일한 전자적 제공방안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제공장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37조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단일한 전자적 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52) 박균성, 『프랑스의 전자정부법제』(한국법제연구원, 2001. 11), 82면 이하.

조치하여야 하다(영 제46조제1항). 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상 동일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일적 전자적 행정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영 제46조제2항). 소속기관으로는 규모가 작은 기관은 별도로 창구를 개설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이 통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 (1)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보의 가치는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지식은 실제 사용된 정보, 또는 사용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sup>53)</sup> 그리고 지식정보자원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여기서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원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정보공동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2) 주요내용

##### 1)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활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대학·연구기관·기업

---

53) 일반적으로 지식은 “일정한 틀을 갖춘 경험, 가치, 전후관계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적 식견이 한데 섞인 유동체”로 정의되고 있다. Thomas H. Davenport, Robert G. Eccles and Laurence Prusak, “Information Politics”,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1992) 참조.



및 개인 기타 지식정보자원을 구축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하며(제5조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등 - 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정보통신부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제2항).

5) 전담기관의 지정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요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에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제9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지정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디지털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지정지식정보자원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인쇄물 출력 또는 전산매체수록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시행령 제11조의2).

그리고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식정보자원의 이용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

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이 전자적인 형태로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3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13조).

#### 7)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 (3) 평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정보화추진기금에서 한국전산원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4. 인감증명법

#####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제4항).

#####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제2조).

#### 5. 주민등록법령

##### (1) 주민등록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거주민등록제도이면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의무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의무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주민등록제도는 뿌리와 태생에서부터 통제적 성격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주민등록 정보는 원인적으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필요적으

로는 관료제의 합리성과 고객인 국민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의 확대에 의하여 더욱 디지털화되어 활용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기본적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디지털화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1년 개정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다시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운데 일부만이 전산화된 것이며, 종이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려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상충된다. 따라서, 행정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민원 서류를 줄여 위·변조에 악용될 여지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내년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주민등록 증명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2) 주요내용

###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

제7조의2제1항은 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세대명부·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리·관리·보관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주민등록표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

민등록표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화일을 작성·변경·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폐기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주민등록표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와 같다(시행령 제10조).

## 2)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제17조의14제1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제2항).

## 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주민등록법 제18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은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자체를 복제하거나 주민등록표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4)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

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43조제3항). 그리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우를 말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속기관명·성명 및 신청목적등을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 제18조제2항제2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당해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호적관계서류와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의 입증자료와 제8호의 입증자료 및 신청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제7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8항).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제9항).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제10항).

한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전산조직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제3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8조의2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제18조의4제1항).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연간 10만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5항).

#### 7)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18조의5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의3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제2항). 전자민원창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제4항).

#### 8)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호(주민등록표화일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제공, 주

민등록업무의 온라인망 관리·운영,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의 사항을 처리 또는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등 자료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

9)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 및 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시행령 제43조제1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

6.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 근거와 국회·정부·법원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등에 관한 통일된 기록물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공정보의 유통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하고,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함으로써(제2조제2호 및 제3호) 기록물관리의 개념이 단순히 보존의 개념이 아니라 활용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물의 활용도 유통과 관련되므로 그러한 한도내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정보의 유통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에 맞도록 생산·관리하도록 하여 표준화를 통한 유통촉진에 관한 고려를 하고 있다.

## 7. 사무관리규정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무관리규정은 제10조의2에서 “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물론 이 규정은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27조는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관련한 규정인데,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행정정보 공동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규정 또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도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상당수의 법령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 모두의 문제점을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법령인 민원사무처리법령과 정보공개법령에 대해서만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민원사무처리법령

#### (1) ‘서류’의 문서에의 포섭 여부

현행법은 문서를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제4조). 문제는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가령 제10조의 민원서류의 이송). 따라서 서류에 대해서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서와 서류를 통합하여 문서로 통일시키는 것이 명확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합치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예외조항을 통한 전자적 민원처리

현행법은 전자적 민원처리를 예외조항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모든 민원의 신청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한하여 전자적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sup>54)</sup> 이에 대해서는 민원실이나 민원사무편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의 신청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54)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 신청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전송하는 것이므로 분명한 근거가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술이나 전화를 통한 민원신청과는 다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민원처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라는 전자적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를 요한다. 그것은 전자적 민원처리는 정보화사회에 맞추어 행정사무를 개선한다는 측면과 함께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 (3) 민원의 이송과 재판증거로의 이용

민원의 이송과 관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004년 5월 구리시는 수택초등학교 앞의 멀찍한 통학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벌이려고 했다. 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본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택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강\*\*)’를 구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운동’을 전개하며 시의 공사 강행을 저지하는 활동에 나섰다. 학부모회는 주민 15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공사 중단을 호소하는 진정을 하는 등 시의 공사강행 방침에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시에서는 공사를 중단했고, 문제의 통학로는 더욱 아름답게 단장돼 ‘경기도에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구리시장은 2004년 9월 14일 당시 학부모 대표였던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씨가 청와대의 인터넷 신문고에 진정한 민원과 공중과 방송과의 인터뷰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9월 26일 강씨는 1심 재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고측이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처리한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강씨와 구리시바로세우기운동본부 역시 벌금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역시 항소하기로 해 2심에서의

진실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11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씨의 청와대 민원 사건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의 우\*\*의원과 윤\*\*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의원은 “강씨는 인터넷 신문고를 믿고 안심하고 구리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민원으로 제기한 것인데, 청와대는 그 민원서류의 원본을 경기도를 통해 구리시로 이첩하여 결국 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민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강씨는 청와대 외에 다른 여러 곳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청와대가 비공개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청와대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의원은 “다른 경로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였다면 모르지만 청와대에 제출된 민원서류의 원본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같은 일은 참여정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사무처리법에서는 민원의 접수와 교부 그리고 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제5조 및 제6조). 법률의 흠결이 있는 셈이다. 다만, 법시행령에서 민원서류의 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위의 구리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서류의 이송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매우 확대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법률에 민원서류의 이송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상의 민원서류의 이송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률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시행령의 규정도 모호한 관계로 행정기관의 책임회피가 가능하여 결국 선의의 민원인만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관리비용의 징수문제

시행령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관리비용의 부과는 민원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첫째, 비용의 부과는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둘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 (5)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전자정부법과 동법시행령은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민원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민원과 전자적 방식에 의하지 않는 민원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민원사무처리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전자민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우선하며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 (1) 지식정보자원의 개념정립의 필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일반적으로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숫자나 사실이고, 정보는 가공되고 해석된 자료이며, 지식은 개인화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55)</sup> 법상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개념상 분명하지 않고 굳이 자료가 디지털화된 것만을 의미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새로운 개념정의를 요청된다고 하겠다. “전자적 지식정보자원”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5) Maryam Alavi and Dorothy E. Leidner, “Review :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 Conceptual Foundations and Research Issues”, MIS Quarterly 25(1), 2001, p. 111 표에서 인용.



## (2) 지식정보자원의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문제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생각건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목적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지식정보자원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생뚱맞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우둔함의 소치일런지는 모르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입법상의 오류 내지 입법상의 사생아가 아닌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종전처럼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 3. 정보공개법령

### (1) 전자적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의 미비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관한 이들 규정은 매우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적다. 또한, 이들 규정은 행정기관의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선택을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선택권을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에는 행정의 특성상 적극적인 행위를 기대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노력의 무가 아닌 실효성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전자정보의 검색정보제공의 문제

정보공개법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실 정보의 검색제공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에게 큰 부담이 되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정보가 전자화되면서 검색제공이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보이며 검색이 용이한 경우 검색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 (3) 전자적 정보공개규정의 불명확성의 문제

정보공개법 제15조는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남겨놓고 있다. 재량행위의 투명화 측면에서도 이러한 요건상의 불명확성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sup>56)</sup> 이러한 불명확성은 제2항에서도 반복되는데, 이를테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건규정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56)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대해서는 김재광 외,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따른 법령정비지침 수립』, 한국법제연구원 2004 참조.

#### (4) 제공정보의 콘텐츠의 문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보생산 공무원의 편의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정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일성있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내용이 풍부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흡하는 등 이미 구축된 인터넷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정보의 콘텐츠의 확대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 (5) 온라인 정보제공과 보안대책

행정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이 중요하다. 일례로 알래스카주는 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에 관한 규정 및 행정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계약에 들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다.<sup>57)</sup> 또한 플로리다주는 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온라인 액세스(online access)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불개시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기록관계자에게 의무지우고 있다.<sup>58)</sup>

### 4. 주민등록법령

주민등록정보는 대부분의 행정행위에 기본적인 정보가 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등록제도는 총 448개의 법령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의 민원양식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통계이긴 하지만 민원서류양식 142가지 중 108가지 민원서류양식(76.06%)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59)</sup> 이러한 현상은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정보이용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57) Id.§09. 25. 115(o).

58) Fla. Stat, Ann.§119. 085.

59) 박홍윤·변종화·임동욱,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정보활용에 대한 연구” 참조.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본질적인 문제점이 노출된다. 일반적으로 1980년의 OECD보호원칙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을 보면, 주민등록제도를 바탕으로 1989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총 140개 항목 가운데 71개 항목과 당시 안기부, 외무부, 노동부 등에서 요구한 41개항 가운데 7개항을 합하여 78개 항목이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의 별지 1호서식에서 혈액형, 직업, 혼인관계, 학력, 동원보류, 동원면제사유 등은 개인에 따라서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인지될 수 있다. 인구이동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민편의와 혈액형, 직업, 혼인관계, 학력 등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에서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합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sup>60)</sup>

둘째, 주민등록정보는 제도적으로 448여개의 법령에서 공동으로 이용되고, G4C시스템 및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정부의 이름으로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수집목적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당한 정보활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 주민등록법이 “주민의 주거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인 성격의 법률이라고 할 때에 법의 기본목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61)</sup>

## 제 4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현황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에는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행정절차법,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60) 박홍윤·변중화·임동욱, 전계논문 참조.

61) 박홍윤·변중화·임동욱, 전계논문 참조.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 (1) 정보통신망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두고 있어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이용환경의 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정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시책에서도 나와있지만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정보내용물 및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적 규율작용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이용환경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법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정보공동활용이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 (2) 주요내용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강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책에는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정보내용물 및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2)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정보통신망 전문기술 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 3)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간 비용부담의 조

정, 그 밖에 정보의 공동활용체제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4)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5) 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14조).

6)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7)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전자문서로 처

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와 같다(시행령 제8조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제2항).

### (3) 평 가

1986년 5월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는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처음으로 규정한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1995년 12월 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전산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공동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망상호간의 연계운영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2월 이 법을 전문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등 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 행정절차법

### (1) 행정절차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현행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서면)와 전자문서의 형식에 의한 행정결정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컴퓨터 통신에 의한 의견제출(법 제27조제1항)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24조 단서, 제31조제3항 등)는 있지만, 이들 규정은 대부분이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2) 주요내용

###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

현행 행정절차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제2항).

###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분의 신청과 처분의 방식

현행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제2항).

또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제1항본문).

### 3)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견청취

#### 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은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컴퓨터통신에 의한 의견제출이 가능한 실정이지만, 컴퓨터통신이란 좁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청문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의견서제출에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전자적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많다.

#### 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공청회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공청회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공청

회를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은데,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공청회의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수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방청인의 의견제시기회의 보장과 관련하여 기술적·시간적 제한을 해결하는 보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현행 행정절차법은 기본적으로는 종이문서에 의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예정한 규정도 두고 있다. 법 제42조제1항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하여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7조는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3. 전기통신기본법

#### (1) 전기통신기본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이용환경의 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2) 주요내용

##### 1) 전기통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전기통신기본법은 정보통신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시행계획을 또한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8조).

## 2) 표준화의 추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제29조).

## 3) 통신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제37조).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2).

#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자적 침해행위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주요내용

### 1)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전기통신기반보호법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3) 보호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 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0조).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은 그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된다(제12조).

5)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대호대책의 수립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17조 및 제18조 참조).

5.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고 이 중에서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에 대한 비밀보호는 법치국가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통신 또는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온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다(제3조 참조).

##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정보통신망법

#### (1) 전자공문서의 보안문제

전자공문서의 운영체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문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공문서의 보안문제는 주로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등이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자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대량 유포된다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실로 클 것이다.<sup>62)</sup>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상당부분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법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sup>63)</sup>

62) 김민호,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제 정비』(한국법제연구원, 2001. 7), 48면.

63) 황승흠,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 2000, 80면 이하.

## (2) 개인정보보호문제 - RFID와 관련하여

### 1) 법개정시 고려사항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문제 또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공공기관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입법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논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인 태도일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당위가 있는 것이다.

### 2) RFID와 개인정보보호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통·물류분야에서부터 항공수하물, 가로수관리, 재고관리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라는 것은 앞서 쓴 바 있다. 참고로 공공부문의 경우, 강서구청은 RFID와 GIS를 이용하여 가로수 위치, 수종, 병력 등을 온라인 및 PDA로 모바일 관리가 가능한 첨단 가로수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경상북도청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의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RFID를 이용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가. RFID와 개인정보의 수집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제22조). RFID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동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해당되어 동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수집방법만 달리할 뿐 일

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다름없으므로 원칙적으로 RFID만의 특유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RFID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동법률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적용여부부터 문제될 수 있으며, 사실상 규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장래 RFID를 이용하게 될 사업자는 동법이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자’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sup>64)</sup> 따라서 RFID는 그 특성상 일반인에 의한 확인이 곤란할 뿐아니라 RFID시스템을 항상 의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가 RFID태그의 부착여부 및 RFID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 RFID리더의 설치여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RFID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①그 적용대상에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여하한 사업자를 포함시키거나 ②RFID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법률 등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계속적 수집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주체의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RFID를 이용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포괄적 동의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의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철회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나. RFID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주체가 RFID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가 RFID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64) 김재광 외, 『IT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현안 분석』(한국전산원, 2004), 44면.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물품 판매업자나 서비스제공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관련계약의 체결을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 방법이나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거부에 따른 사업자의 서비스제공거부와 관련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RFID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없이도 RFID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RFID이용자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RFID리더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RFID 리더감지거나 교란장치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능정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물품판매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법리의 차원에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해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물품판매업자나 서비스제공사업자가 당연히 계약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65)</sup>

#### 다. RFID와 개인정보의 결합

RFID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정보가 기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과 결합하게 되면 RFID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개인정보화하면서 프

65) 김재광 외, 전계연구보고서, 46면.



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발생한다. 또한 RFID 태그로 파악된 위치정보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RFID태그를 소지한 당해 개인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발생한다.

RFID와 개인정보의 결합문제는 기본적으로 ①RFID 태그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②RFID 태그 자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함으로써 RFID 태그 자체에 포함된 비개인정보가 개인정보화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이다. 현행법은 이에 대해 규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개인정보가 개인정보화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인 RFID을 통해 수집된 비개인정보와 이와는 별도로 수집되거나 관리되는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sup>66)</sup>

#### 라. RFID와 개인정보의 관리

RFID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RFID를 통해 수집된 비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비개인정보가 개인정보화한 경우에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 이용가치가 높아 이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거래가능성이 높다. 또한 RFID 태그의 무단복제, RFID리더의 무단사용, RFID시스템 해킹 등을 통해 RFID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손쉽게 복제 및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무단접근, 복제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수집시 고지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66) 김재광 외, 전계연구보고서, 48면.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RFID가 활성화되면 적용되는 분야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손쉽게 취합하거나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RFID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 책임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강화 및 RFID 사용등록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실질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67)</sup>

#### 마. RFID와 위치정보의 이용

RFID는 본래 위치정보의 제공을 주요목적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위치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RFID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개인이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제품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서 본질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RFID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화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제상의 개인정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FID를 통해 파악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RFID 태그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생명·신체상의 위험발생으로 인해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위치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68)</sup>

67) 김재광 외, 전계연구보고서, 49면.

68) 김재광 외, 전계연구보고서, 50면.

## 2. 행정절차법

### (1) 종이문서(서면)의 형식에 의한 행정결정의 전제

행정절차법은 컴퓨터통신에 의한 의견제출(법 제27조제1항)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24조 단서, 제31조제3항 등)는 있지만, 이들 규정은 대부분이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주된 요소로 하는 경우(제8조제1항제4호는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에는 행정절차법의 제1조 “목적”조항에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에 더하여, “신속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청문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은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의견서제출에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전자적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많다.

### (3)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의 문제

특별한 입법적 조치가 없더라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수행의 이념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의 방법으로 전자적 방식 일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상황에서는 종이문서에 의한 예고를 전혀 배제한 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예고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현재로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예고는 종이문서에 의한 예고의 보완적 수단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예고만으로 행정의 예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예고의 대상을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및 전문”으로 개정하여 입법안의 전문이 예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행정절차법은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만 전자정부법에서도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자적 민원신청 등, 전자공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고지·통지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sup>69)</sup>

그러나 이들 규정은 전자민원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므로 현행법과 같이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행정절차의 중요한 사항이고 행정절차법은 전자민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전자적 신청 등, 전자공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고지·통지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중복 규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는 전자정부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전자정부법령의 전자민원절차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sup>70)</sup>

### 제 5 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기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기관련 법제 현황

##### 1. 개 설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기관련 법제에는 대표적으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정보

69) 경 건, “전자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0), 62면.

70) 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삼성SDS, 앞의 보고서, 6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0년 4월 6일 김대중대통령이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화에 뒤진 소외계층이 1,0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제약요인을 불문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화 기회를 갖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지시하였으며, 2000년 11월 25일에는 김효석의원 등 7인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2001년 1월 16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그 동안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법조항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정책추진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71)</sup>

지난 9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의 개연성이 증대되면서<sup>72)</sup>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인 인터넷민원(G4C) 서비스가 허술한 보안기능으로 인한 위·변조 가능성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행자부가 당초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만들 때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했으나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위·변조에 무방비한 상태가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타인명의 도용 등 광범위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

한편 행자부는 문서의 발급번호 확인과 2차원 바코드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 2003년 서비스 개시 이후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여건 중 문서 확인건수는 1만3000여건으로 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바코드 확인도 별도의 스캐너와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민원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71) 고순주·강근복,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8권 제3호, 72면.

72) 행정부, 대검찰청, 대법원, 국세청에서 서비스(총 78종)를 잠정 중단하는 등 크게 사회문제화되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위변조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나, 신고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당초 행자부의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은 사용자 편리성 때문에 보안 기술이 강력한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았는 바, 이는 보안성을 높이면 서버에 보다 많은 부하가 걸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속도의 저하가 뒤따르는 등 한마디로 지금보다 불편해지기 때문에 범용성과 편리성을 위해 암호화 부분 일부를 빼 보안상의 구멍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자정부하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문제는 유비쿼터스 정부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에 견해가 대체로 일치되는 것 같다. 편리함과 역기능은 항상 동반관계(trade off)를 형성하므로, 유비쿼터스 정부에서 특별히 역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역기능 대응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주요역기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안전신뢰성, 정보격차, 접근성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유해정보, 지적재산권, 정보범죄 등도 유비쿼터스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73)</sup>

## 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령

### (1) 정보격차해소법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여기에서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하고(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제2호). 이 법에

73) 한국전산원, “전문가 10인이 바라보는 유비쿼터스사회”, 2005. 11. 4, 참조.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호).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도시인, 유식자, 부자, 장청소년 등에게는 불편함이 없으나 농어민, 무학자, 빈자, 노년층 등에게는 불편하기 그지 없다. 후자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온라인 행정서비스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면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정보격차해소법은 위와 같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행정서비스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주요내용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조).

### 2)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종합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제2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항).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

### 3)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 4)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정보통신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6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항).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제4항).

### 5)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6)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7)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 8)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2항).

### 9)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정보화 교육의 실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3호).

#### 10) 정보화교육의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항).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

#### 11) 정보격차 실태조사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격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11조의2).

#### 12) 재원의 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 13)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2항).

14) 조세특례의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제14조)

15) 관계기관의 협조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16)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제16조제1항).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제2항).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지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정보문화확산 지원,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제3항). 정부는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제4항).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항).

###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미국법제 동향

세계적으로 정보격차문제는 1998년 7월 미국의 상무부가 정보화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청(NTIA)은 1995년 7월 1994년도 미국 도·농간의 소득, 인종, 연령, 교육,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전화 및 컴퓨터의 보급률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이어, 1998년 7월 제2차 실태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본 보고서는 정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정책, 지역적 정보격차 해소정책,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애인(Disabilities)의 정보통신장비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1996년 통신법 제255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자나 이들의 고객들은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통신장비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 제작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장비제조업자와 서비스제조사업자는 장비와 서비스가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접근을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주변장치 또는 장애인용 장비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근성보장위원회(Access Board)는 1998년 2월 3일 접근성보장지침(Telecommunication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장애인들의 정보(information), 문서(documentation), 교육훈련(training)에의 접근 및 이용보장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비와의 호환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8년에 개정된 장애인갱생법(Rehabilitation Act) 제 508조는 “연방정부는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의 직원 뿐만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Access Board로 하여금

동 법조항에 따라 필요한 전자·정보기술의 개념정의와 기술적·기능적 성과 측정기준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Access Board는 2000년 12월 21일 ‘전자·정보기술 접근표준(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을 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OS, 웹기반의 Intranet, Internet 정보 및 어플리케이션, 통신·비디오·멀티미디어 장비 및 서비스 등의 기술적 표준과 기능적인 성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74)</sup>

2002년 전자정부법은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총무처장이 미국학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으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회의를 거쳐 ‘온라인 정부 서비스에 있어서의 인터넷 이용격차’에 대한 연구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인터넷 이용격차의 성격과 원인, 인터넷 이용격차가 온라인 서비스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및 전자정부가 본래 의도와 달리 뜻하지 않게 일반 국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213조는 전자정부국장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술센터의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출연한 지역사회 기술센터의 모범사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연구에는 지역사회 기술센터의 모범사례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기술센터의 발전에 따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망의 설치에 관한 전략, 지역사회 기술센터가 전국에 걸쳐 효과적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연방 출연의 모든 지역사회 기술센터의 데이터베이스 및 지역사회 기술센터의 개발을 장려하는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정부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부정보 및 서비스 접근방법에 관한 온라인 설명서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sup>75)</sup>

74) 고순주·강근복, 전계논문, 80면.

75) 이규정·구병문, 『미국 전자정부법 분석 및 시사점』(한국전산원, 2003), 20면.

###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 (1)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오늘날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임무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수집은 행정목적 수행의 기본전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은 피할 수 없는 공적 요청이며, 그러한 과정의 전자화 역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개성에 비추어 긴급히 요망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클 뿐 아니라 일단 침해되면 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sup>76)</sup>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각종각양의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하게 될 전자정부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보화사회의 꿈인 기술유토피아(Technotopia)를 실현하기보다는 정치적 세력의 봉사자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게 되는 감시사회(oversight society)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sup>77)</sup> 즉, 디지털화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에는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에는 국가기밀정보, 개인신상정보, 산업기술정보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다. 미국이 1990년 초 국가정보통신기반(NII) 구축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둔 정보보호정책을 시작하였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현의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은 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말해준다.

개인정보보호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내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76) 박균성, 『행정법총론』(박영사, 2001), 442면.

77) 홍성태,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2000.10.19.), 1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전제조건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나라의 “1세대”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개인정보관련의 남용으로부터만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정보의 조사로부터 저장·사용·전달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면서 그 보호 목적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sup>78)</sup>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통제가 쉽지 않으므로 정보의 부당한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에서는 데이터매칭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침해사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sup>79)</sup>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낮은 정보보호의식과 입법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보호에 미흡한 편이며, 실제로 개별분야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적용범위와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80)</sup>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 그 이외에 많은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서명법,

78)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제94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2001. 5), 106면.

79) 박균성, 앞의 책, 430면.

80) 김연태,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197면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7), 16쪽 이하 참조.

전자거래기본법, 의료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 민간부문의 개인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법은 개별적인 영역에 한정하여 단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뿐, 체계적·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sup>81)</sup> 다만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여 개정 전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의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한정되던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외에도 예컨대 여행사, 학원, 교습소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에까지 확대되어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이외의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58조). 그러나 이 법이 종전에 비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는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82)</sup>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특히 문제되는 사항은 신원확인과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동(문서송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사무(예컨대,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의료보호 대상자증명등)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원확인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문서송부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되는 것은 복합민원 사무처리의 경우이다.

가능한 한 개인정보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개인정보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유출시 피해가 가장 적은 개인정보가 이동되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송경로를 최소화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자적 민원처리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민원인의 정보가 행정기관으로 전송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전자정부법은 제12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81) 최영규, 앞의 논문, 46면.

82) 김연태, 앞의 논문, 205면.



처리법 제13조도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기존의 종이문서 등을 통해서 수집된 민원인의 정보보호에도 적용되는 광범위한 규정이다.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 따른다. 행정기관이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므로 행정기관에게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같은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노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법령에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다.<sup>83)</sup>

##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현황

공공정보 공동이용의 아킬레스건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면 공동이용은 어렵게 되고, 반대로 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이 분야별로 제정되어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공동이용이 그리 용이하지 않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의 주요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앞에서 언급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분야별 접근방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적부분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83) 한국전산원, 앞의 보고서, 216면.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적용된다.

민간부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은 민간 의료정보, 교육정보, 신용정보 활용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민간부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및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료의 송수신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신비밀의 침해와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54조).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목적의 명시, 수집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정정·삭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동법 제24조(개인정보보호)에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되며(동조 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동조 제2항).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그 밖에 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4항).

###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1)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제1항).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

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제3항).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제4항).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5항).

### 3)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 4)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 5)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문제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은 개인정보를 수집과 이용 및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주체인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업무도 행정기관에게 맡기는 경우

에는 행위자와 감독자가 동일하게 되어서 합리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각국이 얻은 결론은 개인정보보호의 성패는 효율적인 감독기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며,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조정기능과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정보통신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담기능 이외에 새로운 정보기술 형태의 잠재적 영향력과 효과를 판단하여서 정보기술의 적용이 계획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4)</sup>

유럽연합은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지침 95/46/EC)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 활동 등을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지침 제28조(감독기구) 제1항은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이 본 지침에 따라 제정된 국내보호입법의 자국내 집행을 감시하는(monitoring) 책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감독기구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한 독립성”은 기능적인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감독기구의 의사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5)</sup>

유럽평의회 개인정보보호협약의 2001년 추가의정서는 그 전문(Preamble)에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한 요소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도적인 영향 하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단일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설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4) 김재광, 전계연구보고서, 116면.

85) Dammann, U./Simitis, S., EG-Datenschutzrichtlinie, Kommentar, Art. 28 Rn. 6, Baden-Baden, 1997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의 Colin J. Bennett교수와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Charles D. Raab교수는 “강력한 감독기구의 존재는 훌륭한 프라이버시 보호체계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스스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프라이버시문화는 권위있는 옹호자가 없이는 그 스스로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86)</sup>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통합형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미국만이 분산형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영미법계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대체로 독립기구형식을 띄고 있다. 독립기구형으로 갈수록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고 하겠다. 독립기구형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기관장의 임명이 행정부 수반 이외의 국왕이나 총독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위원의 자격이 사법부나 입법부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이들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되고, 사무국이 개인정보보호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sup>87)</sup>

프랑스에서는 국가정보처리및기본권위원회(CNIL)는 사인 및 공법인에 의한 법률의 준수를 감독·통제한다. 국가정보처리및기본권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sup>88)</sup>

대다수 국가의 개인정보감독원의 전문인력은 장관급(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7인에서 15인까지 다양함) 및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전체인원이 40명에서 10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일례로 독일은 연방 및 주정부의 각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에 최소한 5인 이상의 상근인원을 배치할 것을 법정화하고 있다.<sup>89)</sup>

특히 프랑스에서는 17명의 위원이 있는데 임기는 5년이다. 그 위원의 대부분은 선출직이다 : 하원에서 선출된 2명의 하원의원, 상원에서 선출된 2명의 상원의원, 경제사회이사회총회에서 선출된 동 위원회 위원 2명,

---

86) Colin J. Bennett & Charles D. Raab, 『The Governannce of Privacy :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 Ashgate, 2003, p. 107.

87) 김재광,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및 함의”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참조.

88) 박균성, 앞의 보고서, 85면.

89) 정영화, 앞의 논문, 34면.

국사원총회에 의해 선출된 국사원 현직 또는 전직위원 2명, 파훼원 총회에 의해 선출된 파훼원 전직 또는 현직위원 2명, 회계원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회계원의 현직 또는 전직 위원 2명, 그 이외의 위원은 임명된다 :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의 각각의 추천에 의해 테크레에 의해 임명되는 컴퓨터분야전문가 2명, 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테크레에 의해 임명되는 그의 권위 또는 그의 능력을 보아 지명되는 위원 3명, 이 위원회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 다만, 수상에 의해 지명되는 정부위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sup>90)</sup>

[표-3] 개인정보보호기구 비교표

국 가	기관명	구성 현황	기관장 임명	운영현황	주요기능
영 국	정보보호청	· 청장 1인 · 사무국 약 200여명	국 왕	· 청장이 부청장과 직원 임명 (청장 자체 운영) · 의회에 보고	· 사전합의권고 · 개인 정보처리 등록 · 개인 정보지침 제정 · 감독 및 행정 규제 · 법원에 이첩
캐나다	연방프라이버 시보호청	· 청장 1인 · 사무국 약 100여명	총 독	· 청장을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 (청장 자체 운영) · 의회에 보고	· 피해구제 · 가이드라인 제정 · 조사감독 및 행정규제
호 주	연방프라이버 시보호청	· 청장 1인과 사무국 직원	총 독	· 청장이 사무국 운영 (청장 자체 운영)	· 조사 및 감시 기능 · 집행 · 권리구제 · 홍보 및 자문
미 국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 이 표는 한국전산원,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112면을 본 연구자가 보완한 것이다.

90) 박균성, 앞의 보고서, 85면.

현행법상 민간개인정보감독기구는 정토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설립된 한국정보진흥원(정보통신부 산하)과 정보통신부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역할과 유사한 기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법 제53조의2) 및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실질적인 조사권과 집행권이 미약하여 감독기구로서 한계가 있다.

생각건대, 새로운 개인정보감독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일반행정기관과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서 직접 조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방안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기구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형태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부가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원스톱 규제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직무와 예산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로는 전자정부법을 들 수 있다. 전자정부법은 제21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칙 제3조도 인물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인물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의2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교부시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미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주소자원예관법률 제15조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개인정보보호법의 향후 개정추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문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성립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생각컨대, 법현실적으로 공적 부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문제도 문제지만, 사적 부문에서 자료유출 등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는 공공기관에 의한 처리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정보의 보호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sup>91)</sup>

양 부문을 통합하는 것은 대체적인 입법의 경향이긴 하나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은 깊이 생각해 할 것이다.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통합시의 주관부처 설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간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여 오히려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 현행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단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적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sup>92)</sup>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서는 공적 부문만을 규율하고, 사적 부문은 공정신용기록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독일·스웨

91) 성낙인, 앞의 논문, 44면.

92) EU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①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천명(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구체화), ②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치, ③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 ④개인정보분쟁해결을 위한 심판소의 설치(영국)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EU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①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프랑스는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도 보호할 계획으로 연구 중), ②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관리(안보를 제외한 금융, 건강, 종교 등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하여 관장), ③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처리되는 정보와 서류정보에 모두 적용, ④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은 물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제공 등 개인정보 수명주기 전 과정에 적용된다.

덴·영국·덴마크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사적 부문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 있어서도 사적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sup>93)</sup>

#### 4. 형법과 전자민원서비스

전자민원서류 등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대두된 바 있다.<sup>94)</sup> 문서 위·변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35조는 그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다. 이때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sup>95)</sup> 이때 명의인은 반드시 실재인일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이 명의인으로 표시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명의인은 법인격을 가진 자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없는 단체라도 무방하다. 위조에 의한 문서작성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기존문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존의 미완성 문서에 가공을 가하여 그 문서를 완성하거나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기존의 문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문서와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 작성된 문서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 완전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sup>96)</sup> 위조에는 권한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유형위조’와 권한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가 포함된다.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서류의 위조는 주로 타인명의의 문서가 권한없는 자의 명의로 둔갑되는 일이 많은 만큼 주로 ‘유형위조’가 문제된다.

93)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2집 제3호, 293면.

94) 임지봉, “전자민원서비스의 실시의 현황과 문제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입법과제』 한국제연구원, 2005), 26면 참조.

95)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박영사, 2003), 543-544면.

96) 이재상, 전거서, 544면.

이에 비해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변경’이어야 변조이며, 동일성이 깨지면 위조에 해당하게 된다.<sup>97)</sup>

전자민원서비스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므로 위변조의 대상은 공문서가 되어 형법 제225조가 규정한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에 비해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 신용력이 무겁기 때문이다. 이때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공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지 사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지는 불문한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해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도 공문서로 인정된다. 이렇게 위변조된 공문서를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 제229조의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에도 해당하게 된다.

전자민원서류를 위변조해 이를 출력해 사용하지 않고 위변조된 전자민원서류를 전자기록의 상태에 두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행사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27조의2 등에 위반될 수 있다. 즉,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9조는 “제227조의2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35조에서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에 기록되어 출력되기 전의 전자기록은 문서의 요건인 가독성과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해 문서와 같은 형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해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수행상 만들도록 되어 있어 이미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전자기록상태로 제공되는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의 파일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기록에 있어서는 명의

97) 이재상, 전계서, 544-545면.

인이 누구인가가 불명확하고 전자기록 내용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의 보호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이라는 행위 태양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작”과 “변작”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없이 혹은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sup>98)</sup> 만약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에 이를 출력하여 별도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었다면 양죄는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I.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보안관련법제

성공적인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관건이다. 안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1단계는 시스템의 설계 단계시의 보안고려이고, 2단계는 행정처리 과정의 개선, 3단계는 기술·법·제도의 동시정비검토로 압축할 수 있겠다.

#### (1) 기술적 대책

##### 1) 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규칙 마련

공공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 등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기술적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무단 정보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정보보호 관련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정보의 유통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

98) 이재상, 전계서, 569-70면.

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지능화 되어가는 해킹, 바이러스, 정보전 등 유통정보에 대한 인프라 공격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2) “침해사고 대응협의회”의 기능강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민·관 공동으로 해킹방지에 적극 대응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침해사고 대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 내부 운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또한 해커 뿐만아니라 내부 운영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공공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 시스템 운영관리 미숙 등으로 정상작동이 저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공공정보 구분관리

공공기관들은 정보통신망과 공공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공공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공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의 대책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공공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및 정부기록보존소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는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7) 보안성 강화

정보통신부 고시를 개정해 보안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보안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성 평가요소에 보안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감리·검수 및 유지보수단계에서도 보안전문가나 보안전문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8) 정보보호 등 질적 투자에 대한 관심부족문제

기술적 취약점을 이용한 위협으로는 첫째, 급속히 발전하는 공격능력으로 완벽한 기술적 대처의 어려움, 둘째, 통상 시스템 구축 3년 후, 해킹 등 공격능력 8배 이상 증가, 셋째, 특히 민원인 PC나 프린터를 통해 전자문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한, 기술적 한계로 위변조의 가능성의 상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 등 질적 투자에 대한 관심부족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정보보호 등 질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정보화 투자 예산 중 정보보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2005년 정보화 예산 2조 707억원 중 약 5%에 불과하다. 참고로 미국은 평균 8-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상시적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

(2) 제도적 대책

1) 시스템감사제도 도입과 감사인의 육성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보전, 안전, 기밀성 유지,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감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수행할 감사인의 육성이 요구된다. 이 감사기관은 관리층에 직결되는 독립형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은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99)</sup>

2) 수령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체계 확립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내용확인을 강력히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sup>100)</sup>

3) 정부 각 부처 정보화 담당조직의 보안기능 강화

정보화담당 공무원 대상 정보보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연수 및 교육과정에도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 이슈를 포함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sup>101)</sup> 참고로 미국은 CITE(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cellence)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4) 보안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보안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도입·유지 보수 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보호업체와 SI업체의 분리발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SI업체를 통한 통합발주와 SI업체 주관의 보안솔루션 선정으로 인한 보안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사업 수행에 적절한 자원투입 및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5) CSO제도를 통한 상시 보안관리 강화

정부 각 부처 CIO 임명시 전문성을 갖춘 독립 CSO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102)</sup> 민간 분야의 경우에는 첨단 기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독립적 그룹 CSO와 개별 CSO를 임명하여 상시 보안관리를 책임지게

99) 서진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72면 참조.

100) 임종인, 전계논문, 17면.

101) 임종인, 전계논문, 18면.

102) 임종인, 전계논문, 19면.

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지향적이고 정교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CSO체제를 중심으로 상시적 보안관리조직을 구성하여 능동적 대응태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6) 위·변조 차단을 위한 상시점검 체제구축

행자부가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재개를 위해 전자문서 이중암호화, 가상프린터드라이버 정보점검 등 현재 가능한 기술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나 100% 완벽한 위·변조와 해킹 차단은 불가능하므로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자부가 ‘정부합동 보안특별대책반’을 ‘정부합동 인터넷발급서비스 안정화대책반’으로 전환하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과 공조해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적절한 방안으로 본다.

전자정부 보안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체계는 국가정보원이 총괄하고 행자부는 전자정부 사업관련 대민 서비스 정보화 분야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에 전자정부보안팀을 신설, 통합전산센터내에 설치된 각 부처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시설 등에 대해 24시간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있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7) 수령기관의 위변조 검증체계의 미흡성

관리 및 제도적 문제로는 먼저 수령기관의 위변조 검증체계의 미흡성을 들 수 있다. 즉, 기술적 취약점은 항상 존재하나, 수령기관의 검증을 통한 민원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요소(문서확인번호, 이차원 바코드 등)가 첨가되어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현재 기관별로 다양한 기술적 보안장치 마련되어 있었으나,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위·변조 기술에 의해 완벽한 기술적 대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민원인 PC나 프린터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한 기술적 한계와 프린터 사용제한의 어려움으로 위·변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sup>103)</sup>

103) 도경화, “전자민원서비스의 현황과 입법과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19 워크샵 참조.



#### 8) 수령기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수령기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즉, 민원서류 수령기관의 검증 측면으로는 수령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장치를 통해 위·변조 여부 확인하도록 문서확인번호(14~16자리), 이차원바코드를 통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발급문서 복사방지마크 등의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수령기관의 검증절차에 대한 인식부족, 진위여부 확인 비율 낮다. 예를 들어, G4C의 경우에 검증률이 0.5% 수준이다.<sup>104)</sup> 특히 G4C의 경우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이후 검증을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리하여 수령기관의 온라인/오프라인 위변조를 식별하기 위한 검증 S/W에 대한 개발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령기관의 검증절차에 대한 인식부족 및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 (3) 법적 대책

#### 1) 위·변조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로 억제효과 제고

민원서류 위·변조행위는 일반문서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행위에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발급 받은 후 행사목적등으로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 곤란하다. 이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공문서는 전통적 의미의 문서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공문서만 해당하여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자문서이므로 위·변조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나 위·변조된 전자문서의 출력은 공문서로 보아 형법 제225조가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문서의 위·변조 후 출력행위가 수반되는 점에서 출력없이 위·변조된 전자문서로 유통을 시키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또한 원인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출력 이전 위변조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공·사 문서 위조죄 의

104) 도경화, “전자민원서비스의 현황과 입법과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19 워크샵 참조.

에 컴퓨터 사기사용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변조할 때(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강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컴퓨터사기금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다.<sup>105)</sup>

전자문서를 위·변조한 후 출력하면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적용된다. 여기서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변조할 때(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위·변조 방법 공개,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법적 문제로는 위변조 관련 법규의 홍보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통화 위변조와 달리, 전자문서 위변조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체감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처벌 받은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따라서 위·변조 방법 공개, 유포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방법 유포의 파급효과가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위·변조방법의 공개, 유포행위 금지규정과 함께 처벌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sup>106)</sup>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105) 임종인, 전계논문, 20면.

106) 도경화, “전자민원서비스의 현황과 입법과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19 워크샵 참조.

3) 서류발급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대책

서류발급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분담 등의 법적 해석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4) 공공기관의 원본대조 기능강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 서류를 제출받는 개인이나 기관이 원본과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원본 자체는 위변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5)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의 대폭 감소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재개와 동시에 행정기관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기관간 공유정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유망 구축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sup>107)</sup>

##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유비쿼터스사회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이 중요하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독립적 감독기구 마련,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경우 집행력보다는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공공과 민간에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도입이나 정책입안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본질적 폐해나 대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107) 이렇게 되면 2007년까지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중 67%에 해당하는 3억9천만통의 증명서가 줄어들 것이라고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2007년까지 행정정보 공유를 수요가 많은 74종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된 322종의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사실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하여야 하나,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기대효과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우려가 크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1) 공공정보의 유통과 프라이버시침해

공공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본래의 정보제공목적과 달리 이용될 경우 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sup>108)</sup>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목적을 갖는 한도 내에서 자료제공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주민등록DB의 경우 이러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등록DB의 타기관에 대한 제공이 사생활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연 주무부처에서 타기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공정보공동이용을 위해서는 기관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관리기관에 정보관리권을 보장하여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대국민관계에 있어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공동이용에 따라 유출되는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즉 정보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공정보의 송신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다각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정보 자체의 이전을 최소화하고,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용조회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sup>109)</sup>

108) Ann Cavoukin and Don Tapscott, Who Knows : Safeguarding Your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New York : McGraw-Hill, 1996.

109) 전자정부법시행령 제2조는 제8호에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 (2)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시 통제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기관과의 공동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다양한 통제를 받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이용시 허가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목적 이외의 사용은 명확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3) 개인정보감독기구

현행법상 민간개인정보감독기구는 정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설립된 한국정보진흥원(정보통신부 산하)과 정보통신부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역할과 유사한 기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법 제53조의2) 및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실질적인 조사권과 집행권이 미약하여 감독기구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정보감독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일반행정기관과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서 직접 조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방안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기구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형태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부가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원스톱 구제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직무와 예산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력보다는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권장됨에 따라 개인정보 DB를 서로 연동하거나 결합·분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은 그

---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데이터전송방식에 의한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전자조회방식에 의한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에도 해당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체로도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각종 유출사고의 원인이 되고, 잘못된 개인정보가 입력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해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DB와 다른 DB를 매칭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축적되는 DB가 생성되거나 이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sup>110)</sup>

### 3. 정보격차해소법제

#### (1)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의 비보편성

첫째 문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이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국가간 또는 국가내 각 계층간의 정보통신기반이나 서비스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균 시민들도 동등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가 중요하다. 반면에 아직도 PC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가정이 적지 않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제한적이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은 되었지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등이 완전히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정보화 또는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각 정부부처별, 지방정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중복이 심하고 상호 조정이 곤란한 실정이다.

---

110) 김철, 전계논문 참조.

## (2) 접근성 지침의 제정문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제9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접근성 지침의 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며, 반드시 일정한 기한안에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정할 수도 있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결국 장애인이나 노령자의 근본적인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과 활동활성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체제 구축, 의회의 다양한 법적 지원체계마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개발과 지원활동을 위한 메카니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sup>111)</sup>

## (3) 인터넷에의 접속장비와 사용료부담

인터넷에의 접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그 사용료는 아직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평균 시민들이 기술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추고, 전자급부이전(EBT)과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들에 형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

111) 고순주·강근복,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한국전산원, 2001년 가을), 84면.

## 제 4 장 결 론 -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언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른바 전자정부 또는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요소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중단될 수 없는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정부의 시대적 요청이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지속적인 과제이다.

전자정부 그리고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 등 기술만이 법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정부방침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편리함과 보안성은 서로가 대척점에 있는 ‘시소’와 같아서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한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쉽게 드나들기 위해 대문을 열어놓으면 도둑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지적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sup>112)</sup>

유비쿼터스정부가 효율적인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전반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기반확충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세기말 다른 나라보다 일찍이 정보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늘날 IT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건

112) 정태명, “민심연기에 치우친 전자정부 사업” 참조.



인차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이 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기반확대는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의 선행조건이다.

둘째, 기반확충과 더불어 국민들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현재 완성단계에 들어선 u-Korea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잘 홍보하여 유비쿼터스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 정책수행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의 구체적 행정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이에 적용하여야 실질적인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렇게 발굴된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신규서비스 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재원조달 및 합리적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시 공동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새로운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과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관련 법제도 정비도 꼭 필요하다.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의 행위는 언제나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반마련이나 행정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법제도에 대한 정비를 하여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경근,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인터넷법률』  
창간호, 2000. 7
- 강경근, “전자정보공개를 위한 법제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0
- \_\_\_\_\_,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7.
- 강근복 외, 『지식정보화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1999
- 경 건, “전자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0
- \_\_\_\_\_,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법률행정논집』  
제8권, 서울시립대학교 2001. 2
- 구병문,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 『제3차 개인정보보호정책포럼』(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2004. 6. 16)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 2000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전자정부 : 그 현황과 한계』, 1998
-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 패러다임·모형 그리고 개혁』, 커뮤니  
케이션북스, 1999
- 권태환외,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2000

참 고 문 헌

- 김경섭, “한국형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 김민호,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11
- \_\_\_\_\_,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 김성수, 『행정법 I』, 법문사, 1998
- 김성태, 『행정정보체계론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1999
- 김용섭, “인터넷과 행정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2000
- \_\_\_\_\_,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 김연태,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저스티스』 제34권 제5호, 한국법학원, 2001. 10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5
- \_\_\_\_\_,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 김재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0
- \_\_\_\_\_,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고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 \_\_\_\_\_,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 『행정업무 및 대신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 \_\_\_\_\_, “명예훼손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법제』 통권 제523호, 법제처, 2001. 7

- \_\_\_\_\_,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 \_\_\_\_\_,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_\_\_\_\_, “행정정보의 유통에 따른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24호, 2003
- \_\_\_\_\_,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및 함의”, 『공법학연구』 제6권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 김재광 외, 『공공정보관리 법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전산원, 2002
- \_\_\_\_\_,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 \_\_\_\_\_,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적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2004
- 김주환, “디지털정보와 프라이버시권리” [http://www.cybercom.or.kr/99-2\(kjh\).htm](http://www.cybercom.or.kr/99-2(kjh).htm)
- 김진호, “전자정부 구현에 대비하여” 『인터넷 법률』, 법무부, 2000. 3
- \_\_\_\_\_,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 김종철, “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18호, 2003. 7
- 김철완 · 이민영,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2
- 김철완 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
- 김태웅, “전자정부법 해설 및 검토” 『법제』 통권 제525호, 2001. 9
- 딕 모리스 저(이형진 · 문정숙 공역), 『Vote.com : 인터넷과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 대화』, 아르케, 2000

참 고 문 헌

- 류승호·원현욱, 『전자정부의 문서유통』, 한국전산원, 1997
-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_\_\_\_\_,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한국행정연구』, 1999년 봄호(제8권 제1호)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 \_\_\_\_\_, “현행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4집, 단국대학교, 2000. 12
- \_\_\_\_\_, “프랑스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 \_\_\_\_\_, 『프랑스의 전자정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11
- 박영도 외, 『정보화사회의 전개와 입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1992. 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 박홍윤·윤건수, “공공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보화 저널』 제6권 제3호, 1999. 9
- 법무부,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1995
- 변재욱,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_\_\_\_\_,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79
- 빌 게이츠(이규행 감역), 『미래로 가는 길』, 도서출판 삼성, 1995
- 선정원, “행정과제의 공개와 인터넷 :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분석과 함께”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11

- \_\_\_\_\_,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2집 제3호1994. 6
- \_\_\_\_\_,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과 운용현황” 『미국헌법학연구』 제9호, 1998
- 심윤수, “전자·지식정부의 구현방안”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사, 1998
- \_\_\_\_\_, “정보화사회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적 일고찰”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 2000. 6
- \_\_\_\_\_, “韓國における行政情報化の推進状況” 『東アジアにおける行政改革と行政法制の整備シンポジウム』, 名古屋大學法政情報交流센터, 2001. 7
- 이강혁,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와 방향” 『권영성교수 정년논문집(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문사, 1999
- 이규정, “인터넷 관련 일본의 법제 동향과 전망“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Ⅰ)』, 한국법제연구원, 2001. 6
- 이규정·구병문, 『미국 전자정부법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3
-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8호, 2003. 7
-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3
- 임지봉,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검토” 『인터넷법률』 통권 제19호, 2003. 9
- 이원부·방석호·공종렬,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 및 이용규제 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1998. 12

참 고 문 헌

- 이익현, “지식정보사회와 21세기 법제” 『법제』통권 제518호, 법제처, 2000.1
- 이종영, “독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 임지봉,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동향”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 조태제, “지방자치행정에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행정법제의 정비방안” 『토지공법연구』 제10집, 2000. 8
- 정영화, “정보통신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법학의 현안문제』, 한국인터넷법학회, 2001, 11
- \_\_\_\_\_,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법정책 고찰” 『프라이버시보호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9개 시민사회단체 연속 워크숍 제2회 (2003. 8. 21)
- 정준현,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 \_\_\_\_\_, “민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검토”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 정충식, 『전자정부론』, 녹두, 1997
- \_\_\_\_\_,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으로 본 행정형태의 변화” 『행정과 전산』 Vol. 2 No. 4, 2000. 12
- G7 Gol 운영위원회(원성묵, 김장현 역),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최기조,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 『정보화저널』, 제4권 제3호, 1997. 9
- 최병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촉진을 위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 최선희, “미국 전자정부법의 프라이버시조항 시행지침 발표”, 『정보통신정책』 통권 제33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0
- 최영규,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경남법학』 제13집
- 최봉철, “관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성균관법학』 제12호
- 한국전산원, 『21세기 전자정부 비전과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1999. 2
- \_\_\_\_\_, 『사이버 민원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9. 8
- \_\_\_\_\_,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의 법적 장애요인 분석』, 1998. 6
- \_\_\_\_\_, 『공공기관의 CIO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현안문제와 대응 방안』, 1998
- \_\_\_\_\_,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방안 : 카스미가세키』, 1997
- \_\_\_\_\_, 『일본의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과 시사점 - 전자문서유통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1999. 3
- \_\_\_\_\_,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2004
- \_\_\_\_\_,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_\_\_\_\_,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2004
- 한국행정연구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1997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제화의 기본논리와 법안』, 2000. 9
- \_\_\_\_\_,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01. 7
- \_\_\_\_\_, 『2001년도 행정정보화초진시행계획』, 2000. 9
- 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삼성SDS,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 - 시군구 행정정보화를 중심으로 -』, 2001. 5



## 참고 문헌

- 황성돈·황승흠·권기현,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국가과학기술회의, 1999
- 홍성태,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자료, 2001. 10.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1998
- 황주성·권현영, 『공공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2. 국외문헌

### (1) 일본문헌

- 飯山昌弘, 『風景としての情報社会』, 世界書院, 1995
- 白井 均 等, 『電子政府』, 東洋經濟新聞社, 2000
- , 『電子政府 最前線』, 東洋經濟新聞社, 2002
- 廉宗淳, 『電子政府 實現』의 시나리오, 時事通信社, 2004
- 堀部政男 編, 『情報公開・ブライベシーの比較法』, 日本評論社, 1996
- 堀部政男, “個人情報保護法制化の背景と課題” 『法律のひろ』 Vol. 54 No. 2(2001.2)
- 山下榮一·井上洋一, 『情報化社会と人權』, 明石書店, 2000
- 岡夫一明, 『インターネットと市民革命』, 御茶の水書房, 1996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著(Your right to privacy 和譯會譯), 『ブライベシーの權利—情報化社会と個人情報保護』, 教育史料出版會, 1994
- 夏井高人, 『ネットワーク社会の文化と法』, 日本評論社, 1999

- 和田英夫, 『情報の法と倫理』, 北樹出版, 1999
- 岡本篤尙, 『國家機密と情報公開』, 法律文化社, 1998
- 宇賀克也, 『情報公開法 情報公開條例』, 有斐閣, 2001
- \_\_\_\_\_, 『美國の情報公開』, 良書普及會, 1998
- 王子 昇 等, 『情報化社會と法』, 啓文社, 1993
- 村井純, 『インターネット』, 岩波新書, 1995
- \_\_\_\_\_, 『インターネットⅡ』, 岩波新書, 1998
- 藤原宏高編, 『サイベースペースと法規制』, 日本經濟新聞社, 1997
- 高橋和之・松井茂記編, 『インターネットと法』, 有斐閣, 1999
- 内田晴康・横山經通, 『インターネットと法』, 商事法務研究會, 1999
- 田村善之, 『情報・秩序・ネットワーク』, 北海島大學圖書刊行會, 1999
- 多賀谷一照・松本恒雄 編, 『情報ネットワークの法律實務』, 第一法規,  
1999
- 指宿信 編, 『インターネットで外國法』, 日本評論社, 1998
- 宮尾尊弘, 『日本型情報化社會』, 築磨書房, 2000
- 園部逸夫 編輯,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きよつせい, 2003

## (2) 영미 및 독일문헌

- Al Gore, “Bring Information to the World :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9. N. 1
- Alan M Gatan · Martin P. J. Karz · J Fraser Mann, Internet Law, Carswell 1998

참 고 문 헌

- Ann Cavoukin and Don Tapscott, Who Knows : Safe-guarding Your Privacy in Networked World, New York : McGraw-Hill, 1996.
- Colin J. Bennett & Charles D. Raab, The Governnce of Privacy :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 Ashgate, 2003
- Colin J. Bennett, Regulaing Privacy : Data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David Nelken, Law as Communication, Dartmouth, 1996
- Decew, In Pursuit of Privacy : Law, Ethics and the Rise of Technology, 1997
- Dernberg, Hinnekens, etc,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axation, 1998
- Dammann, U./Simitis, S., EG-Datenschutzrichtlinie, Kom-mentar, Art. 28 Rn. 6, Baden-Baden, 1997
- David H. Flaherty,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weden, Franc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1989
- Godwin, Cyber Rights : Defending Free Speech in Digital Age, 1998
- G. David Garson, Public Information Technology : Policy and Management Issues, Idea Group Publishing, 2003
- Harvey L. Zuckman, Modern Communication Law, West Group, 1999

- Holznagel/Krahn/Wertmann, “Electronic Government auf kommunaler Ebene”, DVBl., 1999
- James Michael, Privacy and Human Rights, Dartmouth, 1994
-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50 Stan. L. Rev. 1193, 1998
- Jgeurn, Legal aspects of globalization, BostonKluwer, 2000
- Jonathan Rosenoer, Cyber Law, Springer, 1997.
- Kent D. Stuckey, Internet and Online Law, Law Journal Press, 1999
- Lilian Edward · Charlotte Waelde , Law and the Internet, Oxford, 1997
- Lorder,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 Politics, Technology and Global Restructuring, 1997
- Mark H. Grunewald, E-FOIA and the “Mother of All Complaints”: Information Delivery and Delay Reduction, 50 Administrative Law Review, 1988.
- Martin Eifert and Jan Ole Puschel, National Electronic Government, Routedge, 2004
- Perritt, Law and The Information Superhigway, John Wiley & Sons, Inc, 1996
- Peter Huber, Law and Disorder in Cyberspace, Oxford Univ. Press, 1997
- Perri 6, E-governance, Palgrave, 2004

참 고 문 헌

Raymond Wacks, Personal Information, Clarendon Press, 1989

Reijo Savolainen 외, eTransformation in Governance : New Directions in Government and Politics, Idea Group Publishing, 2004

Solve · Rotenberg,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Publishers, New York, 2003

Thomas J. Smedinghoff, Oline Law, Addison-Wesley, 1996